

# 맞춤형 장애인 복지법제 연구

김정순

KOREA

---

LEGISLATION

---

RESEARCH

---

INSTITUTE

---



연구보고 2014-12

# 맞춤형 장애인 복지법제 연구

김 정 순

# 맞춤형 장애인 복지법제 연구

## A Study on Legislation regarding Customized Welf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연구자 : 김정순(선임연구위원)

Kim, Jeong-Soon

2014. 10. 31.

## 요 약 문

### I. 배경 및 목적

- 오늘날 의학이 발전하고 각종 안전대책이 강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인구증가, 전쟁과 각종 사고 그리고 노령화 등으로 장애인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 많은 장애인은 일상생활,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사회 통합에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오늘날 선진국들은 장애인정책에 있어 장애인의 자립을 지향점으로 하고 있음. 더 이상 시혜적인 복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
- 사회전반에 걸친 장애인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주체자로서 장애인인 당사자의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려고 함.
- ‘맞춤형 장애인 복지’는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장애인 중심의 복지를 구현하는 것임. 이를 통해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따라서 장애인의 특성과 복지 욕구의 변화에 맞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지원, 생활편의시설 제공, 정보접근권 보

장, 일상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의 제공 등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등의 다수 법률이 있음.
  - 그러나, 현행법령에는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미비된 부분이 존재함.
  - 또한,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의 계속되는 개정과 개별법의 제정으로 관련법령의 입법체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이 보고서는 장애와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장애인복지관련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II. 주요 내용

- 장애인 복지 관련 현황
  - 장애인의 개념정의와 장애인복지의 범주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장애인 복지관련 실태 현황

- 장애유형과 등록 현황,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현황, 장애인연금 현황,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현황 그리고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장애인 복지 관련 현행 법제 현황

-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적 동향
- 장애인 인권보장, 고용지원, 교육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장애인연금, 자립생활의 지원, 이동 및 편의시설 등에 관한 장애인 보호 및 지원제도 고찰
-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의 규정현황

□ 외국의 장애인 복지관련 법제 현황

: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외국의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를 살펴 보고 시사점 도출함.

○ 미국

- 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ADA, 1990년 제정),
-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제

: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

근성법(Twenty-Fir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of 2010),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선거접근성법(Voting Accessibility for the Elderly and Handicapped Act), 국가유권자등록법(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건축장애물법(Architectural Barriers Act), 그리고 항공운송접근법(Air Carrier Access Act of 1986, ACAA) 개관

- 장애인 자립 관련 법제

: 재활법(Rehabilitation Act)과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의 장애인 복지 재정지원 제도

○ 일본

- 「장애자기본법」(1970년 제정), 「知的장애자복지법」(1960년 제정),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에 관한 법률」(1950년 제정), 「신체장애자복지법」(1949년 제정), 「발달장애자지원법」(2004년 제정), 장애자자립지원법(2005년 제정) 등

□ 장애인 복지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장애인 복지 관련 법제 현황의 고찰을 통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

○ 장애인법제 체계정비방안

- 「장애인복지법」의 (가칭)「장애인기본법」으로의 개정 동향

○ 장애인등급제의 개선방안

-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인판정 및 등급부여 제도의 문제점
- 등급별 획일적 복지서비스 제공의 문제점
- 획일적 기준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지양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는 서비스 제공제도 법제화
- 장애인 서비스 전담조직의 개선방안
  -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조정하는 전담조직이 필요
- 사회복지서비스신청제도의 개선방안
  - 공공사정체계 구축 의무조항 명시
  - 개인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 명시
  - 지자체간 협력 장치 마련
  - 서비스신청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 편의시설설치 기준 등의 개선방안
  - 최소한의 설치기준에서 최적의 설치기준으로
  - 건물의 용도별 편의시설 설치 등급 부여 기준 마련
  - 편의시설 설치현황 정보 제공
  - 편의시설 미설치 시설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충실



### Ⅲ. 기대효과

- 맞춤형 장애인 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그를 통한 자립을 구현할 수 있는 입법 정책 수립에 기여
- 현행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입법시 참고자료로 활용

▶▶ 주제어 : 장애, 장애인, 장애인복지,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고용,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제

# Abstract

## I. Background and Purposes

- The number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going to increase due to the growth of population in the world, the outbreak of war, the occurrence of various accidents, the advent of aging society and other similar events even though medical industry has been developing and many safety measures have been taken.
- It has been found that a lo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been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their daily life and economic activities and have difficulty in mingling with others of their local community.
- Many developed countries aim at mak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self-supporting. It is acknowledged that providing welfare benefits is imperfect.
- Those countries strive for the eventual implementation of welf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helping them to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as persons who are the subject of rights and equivalent to persons without disabilities so as to support their effort to be self-supporting and by removing barriers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face the everyday society

- ‘Customized welf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not an uniformed standard, but the realization of disabled persons-centered welfare in consideration of their characteristics and needs. During the process of realization of the welfare system, support will be provided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lay a role as the members of the society and to help them self-supporting.
  
-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needs for welfare, such effective measures as ensuring earning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ecuring medical support, providing housing assistance, establishing amenities, guaranteeing of accessibility to information, supporting daily life living, and assuring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Th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the Act on Support for Disabled Children’s Welfare, the Act on Activity Assistant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Act on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the Act on Pens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ther relevant Acts exist in Korea.
  
- However,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have some inadequate or insufficient provisions that do not cover th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Also, it is time for re-examining the current legislation system regarding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ecause laws and regulations thereon have been continuously amended and several individual Acts thereon have been enacted.
- This study aims at preparing desirabl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current laws regarding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of and issues on them in terms of disabilities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II. Major Contents**

- Current status of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Definitions and categor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Master plan for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Current status of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Types of disabilities and registration as persons with disabilities, current status of disability allowance recipients, current status of recipients receiving allowance for a child with disability, current status of the disability pension, current statu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employment quota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Current status of laws regarding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International trends in protect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Overview on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mployment support; education assistance; housing support; medical assistance; disability allowance; allowance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protection of those children; assistance for self-supporting;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support system regarding transportation and amenities
- Relevant provisions under th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the Act on Support for Disabled Children's Welfare, the Act on Activity Assistant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Act on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the Act on Pens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Act on Support for Housing Disadvantaged Persons,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ged Persons,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Disabled Persons Act, the Promotion of Disabled Persons' Enterprise Activities Act, the Act on Guarantee of Promotion of Convenien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Aged, Pregnant Women, Etc., and other relevant Acts
- Current status of legislation regar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other countries: Implications based on findings on legislation regar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 United States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ADA)

- Laws regarding accessib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 Overview of the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the Twenty-Fir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of 2010, the Voting Accessibility for the Elderly and Handicapped Act, the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the Architectural Barriers Act, the Air Carrier Access Act of 1986 (ACAA)

- Laws prescribing provisions to make persons with disabilities self-supporting

- : Overview of the Rehabilitation Act and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 Government funding for welfare program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 Overview of the Social Security Act

- Japan

- The Framework Act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Enactment in 1970),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Enactment in 1960), the Act on Mental Health and Welfare of Perso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Enactment in 1950), the Act on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y (Enactment in 1949), the Act on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order (Enactment in 2004), the Act on Assistance for Self-Supporting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nactment in 2005), and other similar Acts

- Current issues on laws regarding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hereof

- : Analysis of issues from the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laws regarding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the laws
- Suggestion for the improvement of laws regarding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An amendment of th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under which its title would be modified as the Framework Act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Tentative name)
  - Sugges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rating syste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Issues regarding the assessment and rating of disabilities according to medical criteria
    - Uniform provision of welfare service according to the rating classification
    - Legislation for providing welfare service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reventing the provision of uniformed welfare service
  - Suggestion for an organization taking full charge of serv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Necessity of an organization which integrates and coordinates welfare service provided according to a revised rating system
  - Suggestion for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applica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

- Clear statement of mandatory provisions prescribing the establishment of public assessment system
- Clear statement of obligation to strive for efforts in providing welfare service in consideration of personal needs
- Cooperation, request, and transfer between local governments
- Establishment of procedures to raise objections against dispositions rendered in terms of applying for welfare service
- Suggestion for improvement of standards for establishment of amenities, etc.
  - From minimum standards for establishment to optimum standards therefor
  - Preparation of rating scales for amenities depending on the uses of buildings
  - Provision of information on the current status of establishment of amenities
  - Instruction and supervision of facilities in which amenities have not been installed.

### **III. Expected Effects**

- Contribution to formulate legislative policies to materialize th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ocial activities so



as to realize their self-supporting efforts by suggesting methods to embody the provision of customized welf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laws regarding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use of them as source materials to improve the enactments and amendments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future.

➤ Key words : disability, persons with disabilities, disabled persons, welf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disability allowanc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gistr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ating syste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9
제 1 장 서 론 .....	2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
제 2 절 연구의 범위 .....	22
제 2 장 장애인 복지 관련 현황 .....	25
제 1 절 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 .....	25
1. 장애인의 정의 .....	25
2. 장애인 복지의 범주 .....	28
제 2 절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30
1. 장애인종합정책계획의 근거 및 추진 이유 .....	30
2.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내용 .....	30
제 3 절 장애인 복지관련 실태 현황 .....	35
1. 장애유형과 등록 현황 .....	35
2.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 .....	37
3.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현황 .....	38
4. 장애인연금 현황 .....	39
5.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현황 .....	39
6.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39

제 3 장 장애인 복지 관련 법제 .....	41
제 1 절 개 관 .....	41
1.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적 동향 .....	41
2. 국내 장애인관련 입법 동향 .....	43
제 2 절 장애인 복지관련 법제의 내용 .....	47
1. 장애인복지법 .....	47
2.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	59
3. 장애인연금법 .....	65
4.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67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69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73
7. 기타 장애인복지법제 .....	78
8. 소 결 .....	82
제 4 장 외국의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 .....	85
제 1 절 미 국 .....	85
1. 개 관 .....	85
2. 장애인법 .....	88
3.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제 .....	90
4. 장애인 자립 관련 법제 .....	97
5. 사회보장법의 장애인복지 재정지원 제도 .....	99
6. 소 결 .....	102
제 2 절 일 본 .....	103
1. 개 관 .....	103
2. 법제현황 .....	104

3. 소 결 .....	131
제 5 장 장애인 복지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33
제 1 절 장애인법제 체계정비방안 .....	133
1. 현 황 .....	133
2. 개선방안 .....	134
제 2 절 장애등급제의 개선방안 .....	135
1. 현 황 .....	135
2. 개선방안 .....	138
제 3 절 장애인 서비스 전담조직의 개선방안 .....	139
1. 현 황 .....	139
2. 개선방안 .....	140
제 4 절 사회복지서비스신청제도의 개선방안 .....	141
1. 현 황 .....	141
2. 개선방안 .....	142
제 5 절 편의시설 설치 기준 등의 개선방안 .....	144
참 고 문 헌 .....	147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의학이 발전하고 각종 안전대책이 강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인구증가, 전쟁과 각종 사고 그리고 노령화 등으로 장애인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장애인은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사회 통합에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의 문제는 시혜적인 복지차원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이를 넘어서서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접근법에 입각하여 사회전반에 걸친 장애인의 사회참여 등의 장벽을 제거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주체자로서 장애인인 당사자의 사회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실현하려는 국내외적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맞춤형 장애인 복지’가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이었고, 현재의 정책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맞춤형 장애인 복지’는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맞춤형 장애인 복지’는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장애인 중심의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특성과 복지 욕구의 변화에 맞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지원, 생활편의시설 제공, 정보접근권 보장, 일상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의 제공 등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등의 다수 법률이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장애인 복지법령의 마련은 아직 미비된 부분이 존재한다.

또한,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의 계속되는 개정과 개별법의 제정으로 관련법령의 입법체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보고서는 장애와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장애인 복지관련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

구체적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장애인 복지 관련 현황을 개관한다. 여기에서는 현행 법령상 장애인의 정의와 장애인 복지의 범주를 검토하고,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련 실태 현황으로서 장애유형과 등록 현황,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현황, 장애인연금 현황,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현황 그리고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을 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현행 장애인 복지 관련 법제를 살펴본다. 장애인 복지 관련하여 장애인권리협약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이어서 국내 장애인관련 연혁적 입법동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장애인 인권보장, 고용지원, 교육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장애인연금, 자립생활의 지원, 이동 및 편의시설 등에 관한 장애인 보호 및 지원제도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기타 장애인복지법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외국의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ADA, 1990년 제정),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제로서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법(Twenty-Fir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of 2010),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선거접근성법(Voting Accessibility for the Elderly and Handicapped Act), 국가유권자등록법(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건축장애물법(Architectural Barriers Act), 그리고 항공운송접근법(Air Carrier Access Act of 1986, ACAA)을, 장애인 자립 관련 법제로서 재활법(Rehabilitation Act)과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을, 그리고,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의 장애인 복지 재정지원 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일본의 경우 「장애인기본법」, 「신체장애인복지법」, 「지적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지원법」,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 「장애인 학대 방지·장애인의 양호인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 등에 의한 장애인 취업시설 등으로부터의 물품 등의 조달 추진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5장에서는 장애인 복지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장애인법제 체계정비방안, 장애등급제의 개선방안, 장애인 서비스 전담조직의 개선, 사회복지서비스신청제도의 개선방안, 편의시설 설치 기준 등의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 제 2 장 장애인 복지 관련 현황

### 제 1 절 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

#### 1.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의 정의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로 정의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이러한 장애인 중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sup>1)</sup>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동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종류의 장애와 장애종류별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

그 밖에 개별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에서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표 1> 법령별 장애인 정의

법령명	정 의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로서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1) 여기서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



제 2 장 장애인 복지 관련 현황

법령명	정 의
	<p>시행령」에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별표1)</p> <p>- “중증장애인”이란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장애인복지법」제6조).</p>
<p>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p>	<p>-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이거나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p> <p>-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1급과 제2급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 1)이거나,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제3급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아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 「장애인복지법</p>

법령명	정 의
	<p>시행령」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 1)이거나, ③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제1, 2, 3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p>	<p>- "장애인"이란 장애, 즉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및 제2항).</p>
<p>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p>	<p>- '장애인'이란 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거나,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의한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p>
<p>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p>	<p>-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①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아인·정신장애인·호흡기장애인·언어장애인, ②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뇌병변장애인·심장장애인, ③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지체장애인·청각장애인·신장장애인·뇌전증장애인·간장애인·안면장애인·장</p>

제 2 장 장애인 복지 관련 현황

법령명	정 의
	<p>루·요루장애인, ④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3급의 지체장애인, 그리고 ⑤ ③에 해당하는 장애를 2가지 이상 가진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한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1항).</p>
<p>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4.5. 20. 제정, 2015.11.21. 시행)</p>	<p>-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의 장애인을 말한다.</p> <p>①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p> <p>② 자폐성장아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p> <p>③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법제2조제1호)</p> <p>* 현재 대통령령 미제정 상태</p>

## 2. 장애인 복지의 범주

장애인 복지는 그 분야가 매우 넓으며, 오늘날 우리나라 법령에서 ‘장애인 복지’는 기존의 좁은 의미의 생활안정지원, 재활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지원, 생활편의제공 등의 ‘장애인복지’를 넘어서서 이른바 종합적인 ‘장애인법’에 다가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기존의 전통적인 장애인복지조치를 규정함은 물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제1조), 장애인의 권리(제4조),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제5조),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제7조), 차별금지 등(제8조), 장애인정책종합계획(제10조의2),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제11조),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제12조)을 규정하고, 나아가 장애인대상 성범죄의 신고 및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59조의2 및 제59조의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응급조치의무 등(제59조의4 및 제59조의5)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복지’의 개념 또는 범주를 넓혀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자립자금을 대여하고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을 감면하며, 매점 및 자판기 설치 등의 우선허가 등의 생업지원을 하며, 장애인복지단체등의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며, 장애인고용의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나 그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며, 장애인의 주택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 특별공급이나 국민임대주택의 우선입주를 지원하며, 장애인복지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위해 교통편의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며,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활동보조서비스 등의 제공, 활동지원급여 지원 그리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임신 등 활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에게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주거나 의료급여를 지급하며, 장애인 보장구의 세금 감면 등 의료 지원을 하고 있다.

## 제 2 절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sup>2)</sup>

### 1. 장애인종합정책계획의 근거 및 추진 이유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제10조의2)하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제11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① 장애인이라는 특정대상에 대한 생애주기별 정책 추진, ② 소득,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 범부처 차원의 정책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관 등 다양한 주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장애인정책의 특성 때문에 장애인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제4차 종합계획(2013-2017)이 수립·시행 중이다.

### 2.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내용

제4차 종합계획의 비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sup>3)</sup>이다.

향후 5년간 i) 복지 및 건강, ii) 교육 및 문화, iii) 경제활동, 그리고 iv)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의 4대 분야에 걸쳐 각 분야별 19개 중점과제로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71개의 다양한 세부정책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sup>4)</sup>

---

2) 보건복지부 등,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 [http://www.m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1&page=1&CONT\\_SEQ=288936](http://www.m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1&page=1&CONT_SEQ=288936)(2014.6.25.방문)을 요약정리함.

3) 보건복지부 등, 23쪽

4) 앞글, 23쪽

## (1) 장애인 복지·건강서비스 확대

첫 번째 분야인 「장애인 복지·건강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①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② 발달장애인 지원강화, ③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④ 장애인 주거지원 강화, ⑤ 장애발생 예방 및 의료재활 강화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있다.<sup>5)</sup>

구체적으로 i) 중점과제인 ①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위하여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장애인판정제도 개선, 그리고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세부정책과제로 추진하며,<sup>6)</sup> ii) 중점과제인 ② 발달장애인 지원강화를 위하여 발달장애 조기발견 체계 마련, 발달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의 제공,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강화, 그리고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신탁제도 신설을 세부정책과제로 추진하며,<sup>7)</sup> iii) 중점과제인 ③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 장애아동재활치료 및 양육지원사업 확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 그리고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적용확대를 세부정책과제로 추진 하며,<sup>8)</sup> iv) 중점과제인 ④ 장애인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탈시설 후 자립생활 지원 강화,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장애인 전세·구입자금 및 주택개조비 지원 확대, 그리고 장애인주택서비스 확대를 세부정책과제로 추진 하며,<sup>9)</sup> v) 중점과제인 ⑤ 장애발생 예방 및 의료재활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발생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의료재활전달체계 확립 및 접근성 강화,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 모델 개

---

5) 앞글, 29-39쪽

6) 앞글, 29-30쪽

7) 앞글, 31-32쪽

8) 앞글, 33-34쪽

9) 앞글, 35-36쪽

발·보급,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그리고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를 세부정책과제로 추진한다.<sup>10)</sup>

## (2)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두 번째 분야인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를 위하여, ①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② 특수교육 지원 강화, ③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④ 장애인 문화활동 활성화, 그리고 ⑤ 장애인 체육활동 강화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있다.<sup>11)</sup>

구체적으로 i) 중점과제인 ①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장애아동 보육지원 강화,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체계 확립,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강화, 장애 성인 교육지원 확대를 세부정책과제로 추진한다.<sup>12)</sup> ii) 중점과제인 ② 특수교육 지원강화를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그리고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 대상 특수교육전문성 강화를 세부정책과제로 추진한다.<sup>13)</sup> iii) 중점과제인 ③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일반학교 교원·학생 대상 장애인식 개선,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확대, 그리고 장애학생 정당한 편의 제공을 세부정책과제로 추진한다.<sup>14)</sup> iv) 중점과제인 ④ 장애인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확대, 그리고 장애인 영화 관람을 위한 접근권 강화를 세부정책과제로 추진한다.<sup>15)</sup> 그리고 v) 중점과제인 ⑤ 장애인 체육활동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적극 추진, 장

---

10) 앞글, 37-39쪽

11) 앞글, 40-50쪽 참조

12) 앞글, 41-42쪽

13) 앞글, 43-44쪽

14) 앞글, 45-46쪽

15) 앞글, 47-48쪽



애인체육정보·시설 인프라 구축, 장애인스포츠 국제경쟁력 강화를 세부정책과제로 추진한다.<sup>16)</sup>

### (3)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세 번째 분야인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를 위하여, ①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② 장애인기업 및 우수고용기업 지원, ③ 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 그리고 ④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대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있다.<sup>17)</sup>

구체적으로 i) 중점과제인 ①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연금제도 확대 및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지원방안 마련을 세부정책과제로 추진한다.<sup>18)</sup> ii) 중점과제인 ② 장애인기업 및 우수고용기업 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 강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그리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 강화를 세부정책과제로 추진한다.<sup>19)</sup> iii) 중점과제인 ③ 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편 및 운영 강화,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확대,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제공, 그리고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활성화를 세부정책과제로 추진한다.<sup>20)</sup> 마지막으로, iv) 중점과제인 ④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장애인 창업지원 확대, 장애인고용 유관기관 연계 강화, 장애인 고용통계 강화를 세부정책과제로 추진한다.<sup>21)</sup>

---

16) 앞글, 49-50쪽

17) 앞글, 51-60쪽

18) 앞글, 51-52쪽

19) 앞글, 53-55쪽

20) 앞글, 56-58쪽

21) 앞글, 59-60쪽



#### (4)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네 번째 분야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①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②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③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④ 여성장애인 인권보호 및 사회참여 활성화, 그리고 ⑤ 장애인정책 관련 국제협력 강화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있다.<sup>22)</sup>

구체적으로 i) 중점과제인 ①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지식정보접근 이용 확대를 위한 독서환경 구축,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장애인 웹정보 접근성 보장,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그리고 정보화인식개선 및 정보화교육 강화를 세부정책과제로 추진한다.<sup>23)</sup> ii) 중점과제인 ②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 확충,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콜택시) 도입 확대, 전철 등에 이동편의시설 확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추진, 그리고 장애인편익증진 기술·제품개발 및 보급·확산을 세부정책과제로 추진한다.<sup>24)</sup> iii) 중점과제인 ③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인권보호시스템 마련, 정신장애인 복지차별 해소 및 인권강화, 장애인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보급을 세부정책과제로 추진한다.<sup>25)</sup> iv) 중점과제인 ④ 여성장애인 인권보호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확대,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그리고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조력인 제도 도입을 세부정책과제로 추진한다.<sup>26)</sup> 마지막으로 v) 중점과제인 ⑤ 장애인정책 관련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인천전략의 이행 및 점검체계 구축, 인천전략의 효

---

22) 앞글, 61-72쪽

23) 앞글, 61-63쪽

24) 앞글, 64-66쪽

25) 앞글, 67-68쪽

26) 앞글, 69-70쪽

과적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추진,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후속조치를 세부정책과제로 추진한다.<sup>27)</sup>

## 제 3 절 장애인 복지관련 실태 현황

### 1. 장애유형과 등록 현황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 등록장애인은 2,501,112명이다.<sup>28)</sup>

그러나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으므로 장애인 수는 실제로 등록된 인원보다 더 많을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정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등록가능한 장애인수의 통계수치가 달라지게 된다. 예컨대 이동장애를 겪는 임산부, 치료하기 어려운 암 등의 질병, 사고 등에 의한 일시적 장애, 이주국가의 언어와 문화로 인한 이주민의 어려움과 같은 사회적 장애도 장애로 인정한다면 장애의 범주는 현재보다 넓어지게 되어 등록가능한 장애인수가 더 증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등록제와 장애등급제는 1988년 「장애인복지법」 개정법에서 도입되었다. 장애등급제는 등록장애인을 의학적 중증도를 기준으로 하여 1~6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장애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는 장애의 범주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의 10개 장애유형으로 구분되었으나, 2003년부터 호흡기장

27) 앞글, 71-72쪽

28) [http://www.mw.go.kr/front\\_new/policy/policy\\_bd\\_vw.jsp](http://www.mw.go.kr/front_new/policy/policy_bd_vw.jsp)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2013년말\_장애인\_등록현황(최종)-22중.xlsx

제 2 장 장애인 복지 관련 현황

애, 간장애, 간질장애, 안면기형장애, 장루·요루장애가 장애의 범주에 새로 추가되어 총 15개의 장애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1). 2013년 12월 기준 장애유형별 현황은 등록장애인 250만 명중에서 52.3%가 지체장애인이고, 다음으로 청각장애인 10.2%, 시각장애인 10.1%, 뇌병변장애인 10.1%, 지적장애인 7.2%, 정신장애인 3.8%, 신장장애인 2.7%, 자폐성장애인 0.72%, 언어장애인 0.71%, 장루·요루 장애인 0.54%, 호흡기장애인 0.52%, 간장애인 0.36%, 간질장애인 0.29%, 심장 장애인 0.27%, 안면장애인 0.10%로 분포되어 있다.<sup>29)</sup>

장애등급별 현황은 등록장애인 250만명 중에서 24.9%가 6급장애인으로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고, 다음으로 5급장애인이 21.1%, 3급장애인이 17.3%, 4급장애인이 15.2%, 2급장애인이 13.5%, 1급장애인은 8%를 차지하고 있다.<sup>30)</sup>

<표 2> 전국 장애인 유형별, 등급별 현황

(단위: 명)

장애 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계
소계	200,875	338,226	432,001	378,985	527,447	623,578	2,501,112
지체	36,143	72,277	160,999	256,649	387,048	396,169	1,309,285
시각	32,656	7,518	12,406	13,675	21,202	165,638	253,095
청각	6,731	46,596	42,793	56,056	64,041	39,182	255,399
언어	187	1,738	7,455	8,444	4	2	17,830
지적	49,701	60,925	68,238	2	0	0	178,866

29) 앞글 중 <1-1 전국 장애인 유형별, 등급별 현황> 참조.

30) 앞글과 같음

장애 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계
뇌병변	57,174	56,756	60,096	30,866	26,019	22,582	253,493
자폐성	9,007	6,331	2,795	0	0	0	18,133
정신	3,098	32,502	60,074	1	0	0	95,675
신장	3,477	47,713	61	512	14,788	0	66,551
심장	211	919	5,299	22	474	3	6,928
호흡기	1,942	3,499	7,660	3	46	0	13,150
간	315	487	771	200	7,421	0	9,194
안면	102	416	924	1,221	31	2	2,696
장루·요루	13	114	857	6,547	6,015	0	13,546
간질	118	435	1,573	4,787	358	0	7,271

\* 보건복지부, 1-1 전국 장애인 유형별, 등급별 현황(2013년 12월) 발췌 : 2013년말\_장애인\_등록현황(최종)-22종.xlsx

## 2.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

장애수당은 등록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서 18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계층을 수급대상자로 하여 지급된다.

2010년 7월 장애인연금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수당대상자 중 중증장애수당대상자는 장애인연금대상자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2010년 이후의 장애수당 통계는 경증장애수당만 대상으로 하고 있음으로 인해 2010년 이후 장애수당 수급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장애수당 수급자 수

(단위 : 백만원,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예산액	66,449	89,683	111,931	313,032	259,121	265,031	179,162	75,316	79,825
수급자 수	126,061	296,565	346,024	398,197	433,413	486,642	308,243	316,861	314,894

\* 보건복지부 통계포탈 주요지표 100선, 장애수당 수급자 수(2012),  
<http://stat.mw.go.kr/front/statData/majorIdctView.jsp?menuId=17&guidSeq=158&ctgr=F00005>(2014.6.30방문)

### 3.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현황

장애아동수당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아동을 수급대상자로 하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이외에 장애의 중·경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표 4>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현황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급자 수(명)	3,054	3,217	14,895	16,001	17,724	23,057	23,586	22,813

\* 보건복지부 통계포탈 주요지표 100선,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2012),  
<http://stat.mw.go.kr/front/statData/majorIdctView.jsp?menuId=17&guidSeq=159&ctgr=F00005>(2014.6.30. 방문)

#### 4. 장애인연금 현황

장애인연금제도는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을 지급받는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2010년에 258,000명, 2011년에 308,000명이었다.<sup>31)</sup>

#### 5.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현황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현황은 <표 5>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 5>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수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시설수(개소)	319	339	364	386	417	456	478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주요지표 100선,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수(2012), <http://stat.mw.go.kr/front/statData/majorIdctView.jsp?menuId=17&guidSeq=160&ctgr=F00005>(2014.6.30방문)

#### 6.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19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시행되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에 부과된 고용노력은 2000년 개정법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고용의무로 전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31) 보건복지부, “그림 8-2 장애인연금 수급자 현황”, 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제58호, 2012년 11월

<표 6>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단위 : 명, %)

연 도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수	고용률
1991년	2,427,301	26,128	10,462	0.43
1992년	2,432,231	38,959	10,735	0.44
1993년	2,294,250	44,639	11,024	0.48
1994년	2,371,854	46,153	11,406	0.48
1995년	2,529,815	49,299	12,147	0.48
1996년	2,549,774	50,145	12,742	0.50
1997년	2,546,410	49,484	13,634	0.54
1998년	2,229,501	43,645	14,038	0.63
1999년	2,230,987	44,283	17,588	0.79
2000년	2,251,698	44,975	18,499	0.82
2001년	2,292,414	44,804	22,060	0.96
2002년	2,378,485	46,490	25,385	1.07
2003년	2,390,768	46,801	28,139	1.18
2004년	3,847,875	69,108	52,753	1.37
2005년	4,000,662	71,875	61,862	1.55
2006년	5,801,788	107,369	79,480	1.37
2007년	5,807,665	107,012	89,546	1.54
2008년	6,035,950	111,043	104,132	1.73
2009년	6,091,555	120,277	114,053	1.87
2010년	6,511,624	145,535	145,981(126,416)	2.24(1.94)
2011년	6,909,276	154,432	157,468(133,451)	2.28(1.93)
2012년	7,199,417	172,190	168,991(142,022)	2.35(1.97)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3장애인통계(조사통계 2013-04), 72쪽, “ <표 2-2-25>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연도별 ” 재인용

- 주 1)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를 모두 포함  
 2)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은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용 사업주  
 3)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더블카운트) 실시, ( )는 2배수산정제 미적용 현황

## 제 3 장 장애인 복지 관련 법제

### 제 1 절 개 관

#### 1.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적 동향

유엔은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장애인이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펼 것을 각국에 촉구하며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rson)로 선포하고, 1982년에는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ople : WPA)을 채택하고, 이 행동계획을 위한 ‘세계장애인 10년’(Decade of Disabled Persons : 1983-1992)을 지정하여 세계적 차원에서의 장애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sup>32)</sup>

또한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인권조약 제정 운동이 진행되어 2006년 12월 13일에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 with Disabilities, CRPD)과 18개조로 이루어진 선택의 정서(Optional Protocol) (A/RES/61/106)가 유엔에서 채택되었고, 2008년 5월 3일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30일에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2008년 12월 11일에 UN사무국에 기탁함으로써 2009년 1월 10일에 협약이 발효되었다(조약 제1928호).<sup>33)</sup>

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이다. 이것은 21세기 최초의 종합적 인권 조약이며 지역통합기구의 서명이 허용되는 최초의 인권 협약이다. 이 협약은 장애인을 자선, 의료 및 사회적 보호의 ‘객체’

3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2007, 3쪽 참조.

33) [http://www.mofa.go.kr/trade/treatylaw/treatyinformation/multilateral/index.jsp?menu=m\\_30\\_50\\_40&tabmenu=t\\_2](http://www.mofa.go.kr/trade/treatylaw/treatyinformation/multilateral/index.jsp?menu=m_30_50_40&tabmenu=t_2)



에서부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제’로 보고 그에 따른 시책을 보장할 것을 회원국에 촉구하고 있다.<sup>34)</sup>

우리 헌법은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헌법에 의해 적법하게 체결·공포된 국제협약은 국내 이행입법절차가 없어도 국내법으로서 적용된다는 일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장애인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협약당사국의 협약위반으로 피해를 입는 개인·집단이 국내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에도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 진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심리하여 협약위반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배상 및 재발방지 등의 제안과 관련 국내법령 개정 권고를 당사국과 진정인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또한 피해자의 진정이 없이도 직권조사도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선택의정서는 협약의 절차법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유보한 채 가입하여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적용에 있어서 협약의 실효성에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표 7>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내용

구 성	조 항	규정내용
기본이념	제1조~제4조	목적, 정의, 일반원칙, 일반의무
자유권 및 사회권 보장	제5조~제34조	평등과 차별금지(제5조), 여성장애인(제6조), 장애아동(제7조), 인식제고(제8조), 접

34) <http://www.un.org/disabilities/default.asp?navid=15&pid=150>

구 성	조 항	규정내용
		근성(제9조), 생존권(제10조), 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제11조), 법앞의 평등(제12조), 사법에 대한 접근권(제13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제14조), 고문 등으로부터 자유(제15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자유(제16조), 개인의 존엄성 보호(제17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제18조),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제19조), 개인의 이동성(제20조), 의견·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제21조), 사생활 존중(제22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제23조), 교육(제24조), 건강(제25조), 자활 및 재활(제26조), 근로와 고용(제27조), 적절한 생활수준 및 사회적 보호(제28조),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제29조), 문화생활, 레크레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제30조), 통계 및 자료수집(제31조), 국제협력(제32조), 국내이행 및 모니터링(제33조), 장애인권리위원회(제34조)
당사국 행정 및 수반조치 등	제35조~제50조	당사국 보고, 보고서 심사, 당사국과 위원회와의 관계, 위원회 보고서 발효, 유보 개정 및 협약의 폐기 등

## 2. 국내 장애인관련 입법 동향

우리나라는 1963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sup>35)</sup>을 제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애를 입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장애급여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제57조), 1977년에는 시청각장애인의 특수교육종합계획수립, 무상의무교육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특수교육진흥법」<sup>36)</sup>을 제정하였

35) 법률 제1438호, 1963.11.5. 제정(1964.1.1.시행)

36) 법률 제3053호, 1977.12.31., 제정. 이법은 2007년 폐지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

으며, 1981년에는 심신장애 발생의 예방과 심신장애자에 대한 의료 및 직업재활, 그리고 생활보호 등 복지시책을 규정하는 「심신장애자 복지법」<sup>37)</sup>을 제정하였다.<sup>38)</sup> 1989년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sup>39)</sup>으로 법명이 변경되고 장애인등록제가 신설되는 등 전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1990년에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기회확대를 통한 자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의무제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sup>40)</sup>이 제정되었다.

1997년에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시설이나 설비, 그리고 정보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이나 접근권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sup>41)</sup>이 제정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2005년에 일상생활에서 교통수단의 이용 및 보행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2005년)<sup>42)</sup>이 제정되었고, 또한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07년에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sup>43)</sup>의 제정이 있었고,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sup>44)</sup>이 제정되었다. 2008년에

---

수교육법」이 제정되었다.

37) 법률 제3452호, 1981.6.5.제정(1981.6.5.시행).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법률 제4179호, 1989.12.30., 전부개정(1989.12.30.시행))으로 제명이 변경되었다.

38) 권건보, 앞의 논문, 526쪽

39) 법률 제4179호, 1989.12.30., 전부개정(1989.12.30.시행)

40) 법률 제4219호, 1990.1.13., 제정(1991.1.1.시행). 2000년에 전부개정으로 법 제명을 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법률 제6166호, 2000.1.12., 전부개정(2000.7.1.시행))으로 변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을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고용비율을 상향조정하였다.

41) 법률 제5332호, 1997.4.10., 제정(시행1998.4.11.)

42) 법률 제7382호, 2005.1.27.제정(2006.1.28.시행)

43) 법률 제8341호, 2007.4.10.제정(2008.4.11.시행)

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을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sup>45)</sup>의 제정이 있었고, 2010년에는 중증장애인의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제도를 신설하는 「장애인연금법」<sup>46)</sup>의 제정 및 시행이 있었다. 2011년 1월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sup>47)</sup>이 제정되었고, 2011년 8월에는 장애아동과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규정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sup>48)</sup>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sup>49)</sup>이 제정되었고, 최근 2014년 5월에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및 발달장애인 보호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sup>50)</sup>이 제정되었다.

2000년대 장애인관련입법 동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며, 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입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관련 입법 현황은 아래의 <표 8>과 같다.

44) 법률 제8483호, 2007.5.25.제정(2008.5.26.시행). 이에 따라 1977년에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었다.

45) 법률 제8945호, 2008.3.21.제정(2008.9.22.시행)

46) 법률 제10255호, 2010.4.12.제정(2010.7.1.시행)

47) 법률 제10426호, 2011.1.4.제정(2011.10.5.시행)

48) 법률 제11009호, 2011.8.4.제정(2012.8.5.시행)

49) 법률 제11370호, 2012.2.22.제정(2012.8.23.시행)

50) 2015년 11월 21일에 시행된다

<표 8> 장애인법제 입법현황(예시)

영역	법령명
기본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고용·직업재활 및 소득보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 장애인연금법
활동지원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주거보급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 및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장애아동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편의증진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조세·공과금 감면	-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 전기통신사업법 - 방송법
기 타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 국민연금법

## 제 2 절 장애인 복지관련 법제의 내용

### 1. 장애인복지법

#### (1) 개 관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된 후 법률명이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된 것이다<sup>51)</sup> 이 법률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동법 제1조)으로 전부개정되었다. 특히 장애인생활시설의 개념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이 개정<sup>52)</sup>되었고, 「장애인복지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재정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제16조)하도록 하여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총 9장 90개조로 편제되고 있는데, 제1장 총칙(목적(제1조), 장애인의 정의 등(제2조), 기본이념(제3조), 장애인의 권리(제4조),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제5조), 중증장애인의 보호(제6조),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제7조), 차별금지 등(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9조), 국민의 책임(제10조), 장애인정

51) (법률 제4179호, 1989.12.30, 전부개정).

52) 2011. 3. 30. 법률 제10517호와 2012. 10. 22. 법률 제11521호에 의하여 대폭 개정되었다.

### 제 3 장 장애인 복지 관련 법제

책종합계획(제10조의2),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제11조),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제12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제13조), 장애인의 날(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5조), 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제16조)),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장애발생 예방(제17조), 의료와 재활치료(제18조), 사회적응 훈련(제19조), 교육(제20조), 직업(제21조), 정보에의 접근(제22조), 편의시설(제23조), 안전대책 강구(제24조), 사회적 인식 개선(제25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제26조), 주택 보급(제27조), 문화환경 정비 등(제28조), 복지 연구 등의 진흥(제29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제30조)), 제3장 복지 조치 실태조사((제31조), 장애인 등록(제32조),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제32조의2), 장애인복지상담원(제33조), 재활상담 등의 조치(제34조),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제35조), 의료비 지급(제36조),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제37조), 자녀교육비 지급(제38조),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제39조), 장애인 보조건의 훈련·보급 지원 등(제40조), 자금 대여 등(제41조), 생업 지원(제42조), 자립훈련비 지급(제43조), 생산품 구매(제44조), 생산품 인증(제45조), 인증 취소(제45조의2), 고용 촉진(제46조),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제47조),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제48조), 장애수당(제49조),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제50조),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제50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제50조의3),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제51조),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제52조)),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자립생활지원(제53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제54조),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제55조), 장애동료간 상담(제56조)),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제57조), 장애인복지시설(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제59조),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제59조의2),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제59조의3), 장



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제59조의4), 응급조치의무 등(제59조의5), 보조인의 선임 등(제59조의6), 금지행위(제59조의7),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제60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제60조의2),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제60조의3),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제60조의4), 감독(제61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제62조), 단체의 보호·육성(제63조),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제64조),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보조기구(제65조),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제66조), 장애인보조기구업체의 육성·연구지원 등(제67조), 장애인보조기구 연구개발의 지원 등(제68조), 의지·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제69조),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제70조)),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제71조),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제72조), 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제72조의2), 국가시험의 실시 등(제73조), 응시자격 제한 등(제74조), 보수교육(제75조), 자격취소(제76조), 자격정지(제77조), 수수료(제78조)), 제8장 보칙 (비용 부담(제79조), 비용 수납(제80조), 한국언어재활사협회(제80조의2), 비용 보조(제81조), 압류 금지(제82조), 조세감면(제83조), 청문(제83조의2), 심사청구(제84조), 권한위임 등(제85조)), 그리고 제9장 벌칙 (벌칙(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양벌규정(제89조),과태료(제90조))으로 나누어 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2) 장애인의 개념과 장애인등록 및 장애등급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다(동법 제2조 제1항·제2항). 동법시행령은 장애인을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 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



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뇌전증장애인의 15개 종류로 유형화하고 있으며 장애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1).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등록제를 도입하여 장애인 등으로 하여금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게 하며,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동법 제32조제3항) 나아가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동법 제32조제6항).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둔다(동법 제32조제4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으려면 장애인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과 동시에 장애인등급이 결정된다. 등록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장애별로 그 경중에 따라 1-6등급으로 나누고 있다(장애인법시행령 제2조제2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별표1). 그러나 장애의 판정기준이 의학적 기준이라는 획일적 판정기준만을 적용하고 있고, 같은 등급자에게는 특정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의 많고 적음을 고려하지 않고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오고, 나아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장애의 개념 내지는 범주가 확대되는 경향에 있는 등 장애인등록 및 등급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현행 장애등급제를 개편하여 획일적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개별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현행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행해지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현황을 아래 <표9>와 같다.

<표 9>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에 따른 주요 장애인서비스<sup>53)</sup>

구분	주요 장애인서비스					
1급	장애인활동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30%)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지체, 뇌병변 등1~2급)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검사비지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시각, 청각) 이동통신요금 할인 공영주차장 할인 등
2급						
3급	장애인연금(3급 중복), 중증장애아동수당			건강보험료 감면 (20%)	전기요금 할인 (1~3급)	
	경증장애수당 ·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연안여객선할인 (50%)				
4급	장애차량 취득세, 등록세 등 면제 (4급 시각)			건강보험료 감면 (20%)	철도 할인(50%)	
	경증장애아동수당	연안여객선할인 (20%)				
5급	건강보험료 감면(10%)			건강보험료 감면 (20%)	항공요금 할인 (50%)	
6급					철도 할인(30%)	
					항공요금 할인 (30%)	

(3)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장애인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동법 제3조)에 있으며, 장애인은 헌법상 인권으로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제4조제1항)를 받을 권리가 있고, 또한 “국가·사회의

53)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제공(2014.9.3)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제4조제2항), 그리고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제4조제3항)가 있다. 나아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제8조)할 차별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4)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보호 등

장애인복지법은 특히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특별히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중증장애인)에 대한 평생보호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또한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참여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6조 및 제7조).

####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복지 향상에 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예방, 장애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 장애인의 자립지원, 그리고 요보호장애인 보호의 책임을 가지며, 국민은 장애발생예방 및 장애조기발견 노력, 장애인의 인격 존중 그리고 사회통합 이념에 기초한 장애인 복지향상에의 협력책임을 갖는다(제9조).

#### (6)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이러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관계부처 의견 조정 및 정책이행의 감독·평가를 위해 국민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제10조의2 및 제11조). 나아가 장애인정책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한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제12조), 그리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13조).

### (7) 기본정책의 강구

「장애인복지법」은 제2장에서 장애인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본정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① 장애발생 예방, ② 재활의료와 재활치료의 제공, ③ 재활치료후의 사회적응 훈련, ④ 사회통합이념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교육 제공, ⑤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재활훈련의 제공, ⑥ 정보에의 원활한 접근과 의사표시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의 개선 등, ⑦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의 이용편의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⑧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 등에 대비한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조치, ⑨ 교육 및 홍보사업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⑩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제공, ⑪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 및 개선 지원, ⑫ 문화활동과 체육활동 등의 지원을 위한 문화환경정비, ⑬ 정책개발, 복지진흥 및 재활체육진흥을 위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⑭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한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 그리고 장애인과 장애인동행보호자의 운송운임 감면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부터 제30조까지).

이러한 기본정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강구하여야 하는 과제이지만, 단순히 선언적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기본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 및 재정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추상적인 법적 의무가 있으며(제16조), 이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이 제정되어 집행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8) 복지조치

「장애인복지법」은 제3장에서 구체적인 복지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① 장애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제31조), ② 시·군·구에 장애인복지상담원 배치(제33조), ③ 의료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 및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의 소개 등(제34조), ④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리와 사회활동 참여 제고를 위한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제35조), ⑤ 의료비부담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장애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한 장애정도별 의료비지급(제36조), ⑥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산전·산후조리도우미 지원(제37조), ⑦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부양하거나 또는 장애인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급(제38조), ⑧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조세감면 등 지원(제39조), ⑨ 장애인 보조건의 훈련·보급지원 등(제40조), ⑩ 장애인 사업 등에 대한 자금대여 등(제41조), ⑪ 공공시설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의 허가 및 위탁 신청에 대한 장애인의 우선권 등 생업지원(제42조), ⑫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자립훈련에 대한 지원비 지급(제43조), ⑬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의 생산물품에 대한 우선 구매 및 인증제도 실시(제44조 및 제45조), ⑭ 고용촉진(제46조), ⑮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제공(제47조), ⑯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 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우의 국유·공유 재산의 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제48조), 그리고 장

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⑱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장애수당(제49조),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장애인보호자)의 지급 등의 복지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 (9) 자립생활의 지원

「장애인복지법」은 제4장에서 자립생활지원시책강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그리고 장애동료간 상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리고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 강구(제53조), ②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각종 지원서비스 지원(제54조), 그리고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으로서 ③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의 원활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지원과(제55조제1항), ④ 여성장애인의 임신 등의 진료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이 있으며(제55조제2항), 또한 ⑤ 장애극복을 돕기 위한 장애동료간 대화와 상담기회 제공 사업 등의 실시(제56조)를 규정하고 있다.

### (10) 장애인복지시설 등

#### 1)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이 되도록 ① 필요한 정책 강구, ② 장애인 인권의 보호, ③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선택권의 최대한 보장, ④ 필요정보의 충분한 제공, 그리고 ⑤ 장애인복지시설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서비스 제공시에는 장애인의 성별·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제5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79조제2항).

## 2)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설치 등

### 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장애인복지시설은 ① 장애인 거주시설, ②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④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그리고 ⑤ 장애인 생상품판매시설(동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제36조)로 분류된다.

### 나)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과 운영자의 의무

보건복지부장관은 ①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설운영자는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제60조의3제1항 및 제2항).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는 ① 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호, ②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③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60조의4).

### 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신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을 하려면 해당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59조). 신고한 자는 지체없이 시설 운영을 시작하여야 한다(제60조제1항)

### 라) 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 평가의 결과 등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보조할 수 있다(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 3) 장애인에 대한 학대 등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제59조의7),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및 학대 신고(제59조의2 및 제59조의4),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의무와 보조인 선임(제59조의5 및 제59조의6)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가)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①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③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그리고 ④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제59조의7).

#### 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및 학대

① 누구든지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이나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②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는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거나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59조의4제1항 및 제2항).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종사자에게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제59조의2제4항)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제59조의5제1항 및 제2항).

성범죄자는 일정기간동안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등을 할 수 없다(제59조의3제1항).

### (11)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 1)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제65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제6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조기구업체의 육성 및 연구지원을 위하여 생산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 지정, 자금융자와 보조 등을 할 수 있으며(제67조 및 제68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장려 정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제68조제1항).

#### 2)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등의 양성 및 훈련(제71조제1항),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비용의 보조(제71조제4항), 의지·보조

기 기사 및 언어재활사의 국가시험 실시와 자격증 교부 등(제72조, 제72조의2 및 제73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범위는 ① 의지·보조기 기사, ② 언어재활사, ③ 수화통역사, 그리고 ④ 점역사·교정사로 규정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

## (12) 조세감면 및 심사청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다(제83조제1항)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84조제1항).

## 2.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 (1) 개 관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동법 제1조) 2007년 제정<sup>54)</sup>되었고 총 6장(총칙(제1장), 차별금지(제2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제3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제4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제5장), 벌칙(제6장)) 50개조로 편제되어 있다.

---

54) 법률 제8341호, 2007.4.10.제정(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

## (2) 장애인차별의 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조)고 규정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하며(제2조제1항),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 한다(제2조제2항).

### 1) 차별행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①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②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⑤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앞의 ①부터 ④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그리고 ⑥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

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건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앞의 ④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제4조제1항).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장애에 따른 차별로 보며(제5조제1항),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제5조제2항).

## 2) 정당한 편의의 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제4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8조제2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가 금지되는 영역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의 한 예로서, 고용영역에서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① 시설·설비·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② 재할,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③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④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⑤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⑥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1조제1항).

### 3) 차별의 예외

#### 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①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와, ②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제4조제3항).

#### 나.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제4조제4항).

### (3) 장애인차별 금지영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며,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가 금지되는 영역으로 제2장(차별금지)에서 ① 고용(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② 교육(제13조 및 제14조), ③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④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제26조 및 제27조), ⑤ 모·부성권, 성 등(제28조 및 제29조), 그리고 ⑥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제30조 및

제31조)의 영역을 설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3장(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에서는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장애여성(제33조 및 제34조), 장애아동(제35조 및 제36조), 그리고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한 차별금지(제37조)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여성의 경우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이 금지되며(제33조제1항), 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아야 하고(제33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 기회를 제한 또는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제34조제2항)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장애인차별 금지영역을 개관하면 아래의 <표 10>과 같다.

<표 10> 장애인차별 금지영역

영역 또는 대상	내 용
고 용	- 차별금지(제10조) -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제11조) - 의학적 검사의 금지(제12조)
교 육	- 차별금지(제13조) -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제14조)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제15조) -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제16조) -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제17조) -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제18조) -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제19조)

제 3 장 장애인 복지 관련 법제

영역 또는 대상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제20조)</li> <li>-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제21조)</li> <li>- 개인정보보호(제22조)</li> <li>-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23조)</li> <li>-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제24조)</li> <li>- 체육활동의 차별금지(제25조)</li> </ul>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제26조)</li> <li>- 참정권(제27조)</li> </ul>
모·부성권, 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부성권의 차별금지(제28조)</li> <li>- 성에서의 차별금지(제29조)</li> </ul>
가족·건강· 복지시설, 건강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제30조)</li> <li>-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제31조)</li> <li>- 괴롭힘 등의 금지(제32조)</li> </ul>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제33조)</li> <li>-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34조)</li> <li>-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제35조)</li> <li>-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36조)</li> <li>-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제37조)</li> </ul>

(5)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금지된 장애인차별행위의 피해자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으며(제38조),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직권조사권이 있으며(제39조),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전담할 장



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며(제40조), 금지된 차별행위에 대한 국가인원위원회의 구제조치 등 권고 내용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통보(제42조), 차별행위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법무부의 시정명령(제43조), 법무부장관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 또는 시정명령의 확정(제44조), 법무부장관의 차별행위자에 대한 확정된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제45조), 손해배상(제36조), 입증책임의 배분(제47조), 법원의 구제조치(제48조) 및 악의적 차별행위자에 대한 벌금 또는 징역형의 벌칙(제49조),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3. 장애인연금법<sup>55)</sup>

#### (1) 개 관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2010년 제정되었고, 총 27개조로 편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목적(제1조), 정의(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수급권자의 범위 등(제4조),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제5조), 기초급여액(제6조), 부가급여액(제7조), 장애인연금의 신청(제8조), 신청에 따른 조사(제9조), 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제10조),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제11조), 금융정보등의 제공(제12조), 장애인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제13조),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제14조), 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제15조), 신고의 의무(제16조), 장애인연금의 환수(제17조), 이의신청(제18조), 압류금지 등(제19조), 시효(제20조) 끝수의 처리(제20조의2), 비용의 부담(제21조),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22조), 업무의 위탁

55) 법률 제10255호, 2010.4.12.제정(최근개정 : 법률 제12620호, 2014.5.20., 일부개정)



(제23조), 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24조), 별칙(제25조), 양벌규정(제26조), 과태료(제27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2) 중증장애인의 정의

이 법에서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제1호).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달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 간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 의욕 및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제2항).

## (4) 수급권자의 범위 등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에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제4조제1항 및 제2항).

### (5)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제5조제1호)를 말하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제5조제2호)를 말한다.

### (6) 장애인연금의 신청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제8조제1항).

### (7) 비용의 부담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한다(제21조).

## 4.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sup>56)</sup>

### (1) 개 관

이 법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2012년에 제정된 것으로 총 21개조 구성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목적(제1조), 정의(제2조),

---

56) 법률 제11370호, 2012.2.22.제정(최근개정: 법률 제12251호, 2014.1.14., 타법개정)

국가 등의 의무(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주거지원계획의 수립(제5조), 시·도 주거지원계획의 수립(제6조), 주거실태조사(제7조),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제8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제9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제10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기준(제11조),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제12조),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 조건 등(제13조), 임대 현황 등의 신고(제14조), 주택개조비용 지원(제15조), 주거약자용 주택 개조비용을 지원받은 임대사업자의 의무(제16조), 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제17조), 권한의 위임·위탁(제18조), 벌칙(제19조), 양벌규정(제20조), 과태료(제21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2) 주거약자 등의 정의

이법에서 “주거약자”란 ① 65세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그리고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제1호).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①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②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주택, ③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 매입임대주택 중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주택, ④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5조의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한 주택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제2조제2호).

## (3) 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①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② 주거약자용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며, ③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편의시설이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

####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도록 한다(제4조)

#### (5) 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①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위한 대상 주택의 확인, 개조공사의 적정성 확인 등 주택개조 지원에 관한 업무, ②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 ③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④ 그 밖에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 둘 수 있으며(제17조제1항), 주거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조직·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17조제2항).

###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1) 개 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 편의법’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

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1997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29개조로 편제되고 있으며, 목적(제1조), 정의(제2조),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제3조), 접근권(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6조), 대상시설(제7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제8조), 시설주의 의무(제9조),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제10조), 실태조사(제11조),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제12조), 편의증진심의회 설치 등(제12조의2), 설치의 지원(제13조), 연구개발의 촉진등(제14조), 적용의 완화(제15조), 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제16조),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제16조의2),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제17조), 삭제(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제22조) 시정명령등(제23조), 벌칙(제25조), 양벌규정(제26조), 과태료(제27조), 이행강제금(제28조), 권한의 위임·위탁(제29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2)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접근권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1호).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제2조제2호). 그리고 “접근권”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4조).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제6조), 편의시설에 관한 실태조사와 지도·감독을 한다(제10조 및 제11조).

### (4) 편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및 편의증진심의회 설치 등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편의증진심의회를 둔다(제12조 및 제12조의2).

### (5)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① 공원, ②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③ 공동주택, ④ 통신시설, ⑤ 기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sup>57)</sup>을 말한다(제7조).

### (6) 편의시설의 설치와 편의제공

#### 1)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은 최단거리 이동의 원칙이며, 이는 장애인들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제3조).

---

5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2) 시설주의 편의시설 설치·유지·관리의 의무

시설주는 대상시설의 설치 등의 경우 장애인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제9조제1항)

3) 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을 비치하여 장애인등이 당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제16조제1항), 이러한 편의 제공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감안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제16조제3항)

4)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제공

장애인은 일정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 대하여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용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제17조제1항).

(7) 실태조사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실시 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11조제1항 및 제3항).

### (8) 조세감면 등

장애인등편의법은 민간 시설주에게도 편의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제9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부담을 경감하고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과 기술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제13조제1항), 법인과 개인이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당해 시설 설치에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제13조제2항).

### (9) 시정명령, 벌금,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대상시설의 시설주가 장애인등편의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동법 제23조제1항), 시설주가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벌금, 과태료와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제25조, 제26조제1항제1호및제2호, 제28조).

##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1) 개 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고 한다)은 장애인등편의법이 주로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교통수단이나 도로 등을 이용한 장애인 등의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교통수단 등의 차별 없는 이용과 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약자법이 제정<sup>58)</sup>되었다.<sup>59)</sup>

58) 법률 제7382호, 2005.1.27., 제정(시행 2006.1.28.)

59) 「교통약자법」의 입법과정은 배용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 법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동법 제1조)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등의 “시설·설비의 동등한 이용과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는 접근권 보장”<sup>60)</sup>에 관한 법이라 한다면, 「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용편의를 보장하는 이동권 보장”<sup>61)</sup>에 관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2005년 제정되었고, 총 6장(총칙(제1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제2장),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등(제3장),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등(제4장), 보칙(제5장), 그리고 벌칙(제6장)) 34조로 편제되고 있다.

## (2) 교통약자의 이동권

「교통약자법」에서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동법 제2조 제1호)을 말한다.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동법 제3조).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사업자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

를, 그 비판과 전망」, 2010,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74~283 쪽 참고.

60) 우주형,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 『법제연구』 제41호, 2011, 한국법제연구원, 150쪽.

61) 앞글, 150쪽.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할 책무가 있으며(동법 제4조), 교통사업자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준수 및 교통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 대한 노력의무가 있으며, 교통수단제작 사업자는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구조·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의 개발·제조에 대한 노력의무가 있다(동법 제5조).

#### (4) 이동편의 증진계획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제6조), 시장·군수는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7조 및 제8조).

#### (5)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① 교통수단, ② 여객시설, 그리고 ③ 도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sup>62)</sup>이다(제9조).

#### (6)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과 편의제공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제2조제7호).

#####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

---

6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의 [별표1]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령령으로 정하며(제10조제1항),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제10조제2항)

## 2) 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교통사업자 또는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상시설을 설치 등을 할 때는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제11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심사를 하여야 한다(법 제12조).

## 3) 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이용을 위하여 충분한 승하차 시간과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저상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하여야 한다(제14조제1항).

시장이나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저상버스등 도입 및 저상버스등의 운영을 위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하여야 한다(제14조제3항). 이 경우 저상버스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14조제4항)

## 4) 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하여야 한다(제1조제1항).

## 5)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지

원을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제2조제8호). 시장이나 군수는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하며(제16조제1항), 특별교통수단 운행자와 이용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시켜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제16조제2항). 국가 또는 도는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16조제6항)

#### 6)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

교통사업자는 대통 교통약자 등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수화·통역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7조제1항).

#### 7) 교통수단 등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으며(제17조의2제1항), 또한 이러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제17조의2제2항).

#### 8)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등

시장·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제18조제1항), 보행우선구역에서의 보행시설물의 설치(제21조제1항), 불법시설물의 정비(제23조)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7) 장애인 등의 자가운전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자가운전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제도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동법 제27조).

(8) 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①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 ②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③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④ 보행환경 실태, ⑤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⑥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제25조제1항).

7. 기타 장애인복지법제

앞에서 기술하지 못한 기타 장애인복지법제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을 개관하면 다음 <표11>과 같다.

<표 11> 기타 장애인복지법제 개관<sup>63)</sup>

법률명	제정일자	주요내용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990.1.13. 고용노동부	-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보호고용, 취업알선, 취업알선기관 연계, 자영업 장애인에 대한 지원, 장애인 근로자 직업생활자금 지원, 취업 후 지도, 사업주 고용지도, 장애인 고용 사업주 용자 등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지원, 장애인관련 정보·자료 제공, 장애

63)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교재 개발, <표15> 발췌 재인용 및 추가구성, 2013, 91-94쪽

제 2 절 장애인 복지관련 법제의 내용

법률명	제정일자	주요내용
		인 실태조사 - 장애인고용의무 및 부담금제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기금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2005.7.29. 중소기업청	- 장애인의 창업·기업활동 촉진 - 차별적 관행 시정 - 장애인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위원회 - 장애인창업지원특례, 자금지원우대, 공공기관 구매촉진, 경영능력향상지원, 세제지원,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부 - 한국장애인경제연합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 구매특별법	2008.3.22. 보건복지부	- 중증장애인 고용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우선 구매 지원을 통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촉진위원회 설치 - 우선구매지원, 공공기관 구매촉진,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정, 생산시설·업무수행기관 지정 - 세제지원, 국·공유재산 중 무상대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07.5.25. 교육부	- 장애인과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적 교육환경 제공,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실시 - 특수교육대상자 - 의무교육·무상교육 : 유치원·초·중·고등학교과정교육 의무교육 :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전공과와 만 3세미 만장애영아교육 무상 - 배치: 일반학교 일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제 3 장 장애인 복지 관련 법제

법률명	제정일자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운영센터</li> <li>-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li> </ul>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11.1.4.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생활·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li> <li>- 신청자격: 6세 이상 1급·2급 등록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 등에 입소하지 않은 사람</li> <li>- 급여종류: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li> <li>- 활동지원급여 신청, 수급자격심의, 활동지원등급 변경 등</li> <li>- 활동지원급여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활동보조지원급여 제한·정지</li> <li>-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li> </ul>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011.8.4.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통합적 지원</li> <li>- 18세 미만 등록장애인과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만 6세 미만 아동</li> <li>- 장애아동 복지지원에 관한 특별법</li> <li>- 장애아동의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임무</li> <li>-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li> <li>-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복지지원 제공절차</li> <li>- 복지지원의 내용: 의료비, 보조기구, 발달재활서비스, 보육, 가족,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지역사회 전환, 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 제공</li> <li>- 복지지원 제공기관, 장애영유아 어린이집</li> </ul>
발달장애인	2014.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달장애인 인권보호체계 및 발달장애인과</li> </ul>

법률명	제정일자	주요내용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5.11.21. 시행)	<p>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을 아동 및 성인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로 함.</li> <li>-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연계를 통해 발달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li> <li>-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기결정권의 보장,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의사소통도구 개발 및 지원,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의 신고의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조사권 부여 등.</li> <li>-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정밀진단 비용 지원, 치료 및 재활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 서비스제공, 평생교육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li> <li>-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휴식지원 및 비장애 형제·자매에 대한 지원 등</li> <li>-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 복지정보 제공, 발달장애인 학대 등 신고 접수 시 현장출동·조사·보호조치, 상담 및 인식개선 홍보 등의 업무</li> </ul>

그 밖에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발소비세법」 등에서는 장애인조세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4장제3절에서는 장애연금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의료급여법」에서는 등록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제13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등록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제51조제1항) 및 지역가입자인 장애인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건강보험료 일부 경감(제75조제1항제3호)을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9호에서는 등록장애인 가구의 TV수신료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은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동법 제8조제1항제3호)은 통행료의 100분의 50이 감면된다(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다목).

## 8. 소 결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는 최근에 많은 법이 제정되었다. 관련법제의 발전은 괄목할 만하다 할 수 있다. 시대와 환경이 변하면서 그만큼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함께 온전하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시키는 것이 사회발전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법들이 그때 그때의 시대적 요구와 필요성에 따라 입법되고, 소관청도 달라서 되어서 장애인복지관련 법전체의 체계성이나 중복성에 문제점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앞으로 풀어야 할 입법과제이기도 하다.

“맞춤형 장애인복지”라는 슬로건도 시대상황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도록 하는 입법경향이 최근의 장애인관련법 개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도록 하는 선언적 법조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복지서비스제공 과정에서의 장애인의 의사결정 참여, 권리옹호, 그리고 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 제공까지도 규정하는 원스톱 맞춤형 장애인복지서비스 제도가 제공되고 있다. 최근 2014년 5월 20일

(2015.11.21시행)에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은 제3장(복지지원 및 서비스)에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연계를 통해 발달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법제화하고 있다. 이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서 발달장애인등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제18조제4항)할 수 있으며,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하며(제19조제1항), 계획 수립은 의뢰받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은 결정된 복지서비스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또한 발달장애인의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제공을 통하여 복지서비스의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제19조제2항 및 제3항), 이수립된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으면 효력을 가지게 되며(제18조제4항),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은 복지서비스 제공시간 및 방법·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복지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0조제1항 및 제2항).

이처럼 개인별 특성과 복지욕구를 고려한 개인별복지서비스제공 계획의 신청부터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복지서비

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 한 것은 “맞춤형 장애인복지”를 구현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애인관련 법제에서도 이러한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절차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체화하는 법적 근거마련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제 4 장 외국의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

## 제 1 절 미 국

## 1. 개 관

미국 장애인 법제의 전개과정은 1990년 장애인법 제정 전후를 기준으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법 제정 전에는 장애인관련법은 사회복지법의 일부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of 1935), 재활법(Rehabilitation Act, 1973) 등 장애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복지제도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다.<sup>64)</sup> 그러나 1960, 70년대부터는 단순한 복지차원의 재정지원이나 의료지원은 장애인의 동등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 혜택이나 자선이라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였다.<sup>65)</sup> 미국 시민권(Civil Rights) 운동과 발맞추어,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같은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고,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의 ‘장벽(barrier)’ 문제로 보기 시작하였다.<sup>66)</sup> 장애인은 고용이나 공공시설 등의 장벽을 넘지 못하여, 경제,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인식변화나 기반시설의 장벽을 없애고, 장애인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해 주면,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취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다는 시민권적 발상에 기초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법」을 1990년에 제정하게 된다.<sup>67)</sup>

64) Samuel R. Bagenstos, The Future of Disability Law, 114 Yale L.J. 1 (October, 2004) p. 10.

65) Id., pp. 12~13.

66) Mark C. Weber, Disability Rights, Welfare Law, 32 Cardozo L. Rev. 2483 (July, 2011), pp. 2489~2490.

미국은 2009년 7월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sup>68)</sup>에 서명했으나, 2014년 6월 현재까지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sup>69)</sup> 그 이유로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실질적인 근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미국의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이 유엔 협약 내용과 일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미국의 장애인법이 장애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데, 유엔 협약을 별도로 비준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견도 제시되었기 때문이다.<sup>70)</sup>

미국의 「장애인법」은 1990년에 제정되어, 2008년에 개정되었으며, 장애인의 취업, 일상생활에 장벽이 되는 고용, 시설물의 장벽을 제거하여, 사회, 경제생활에서 차별받는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미국의 장애인관련법 중 가장 대표적이고 종합적인 법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장애인법이 장애인인권을 주창하는 국제조약의 모범이 되고,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법이다.

미국 법무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일반인을 위한 정보자료인 2009년 발행 “장애인 관련법 안내”<sup>71)</sup>는 장애인 관련 법률로 “장애인법(Americans

---

67) Bagenstos, Id., pp. 12~13.

68)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2006년 12월 13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08년 5월 3일에 발효되었다. 2014년 6월 현재, 서명에 참가한 국가는 158개국, 가입 또는 비준을 한 국가는 147개국이다.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V-15&chapter=4&lang=en](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V-15&chapter=4&lang=en) (2014. 6. 14. 최종방문).

69) CRPD, Convention and Optional Protocol Signatures and Ratifications, <http://www.un.org/disabilities/countries.asp?navid=17&pid=166> (2014. 6. 5. 최종방문); 2012년 12월 미국 상원에서 협약 비준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Ramsey Cox and Julian Pecquet, “Senate rejects United Nations treaty for disabled rights in a 61-38 vote,” TheHill, Dec. 4, 2012. <http://thehill.com/policy/international/270831-senate-rejects-un-treaty-for-disabled-rights-in-vote>.

70) Pierce Nahigyan, “Why the U.S. Refuses to Ratify the U.N. Disabilities Treaty,” NATIONOFCHANGE, Mar. 18, 2014, <http://www.nationofchange.org/why-us-refuses-ratify-un-disabilities-treaty-1395147907>.

71) U.S. Department of Justice, A Guide to Disability Rights Laws, July 2009,

with Disabilities Act, ADA)”,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공정 주택공급법(Fair Housing Act)”, “항공운송접근법(Air Carrier Access Act)”,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선거접근성법(Voting Accessibility for the Elderly and Handicapped Act)”, “국가유권자등록법(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시설입소자 시민권법(Civil Rights of Institutionalized Persons Act)”,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재활법(Rehabilitation Act)”, “건축장애물법(Architectural Barriers Act)”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후 제정된 장애인 관련법으로는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법(Twenty-Fir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of 2010)”<sup>72)</sup>, “유전자정보 차별금지법(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sup>73)</sup> 등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법은 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장벽을 없애는 접근성 보장과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권리 침해구제 등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을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연방법제도로써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sup>74)</sup>에 근거한 “사회보장장애연금(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과 “추가보장수입(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sup>75)</sup>이 있고, 의료지원으로 장애인을 위한 Medicare(노인 및 장

<http://www.ada.gov/cguide.htm> (2014. 6. 14. 최종방문).

72) Pub. L. No. 111-260, 124 Stat. 2751 (2010) (as codified in various sections of 47 U.S.C.) (2010. 10. 8. 제정) (S. 3304, 111th Cong.)

<http://www.fcc.gov/encyclopedia/twenty-first-century-communications-and-video-accessibility-act-0>.

73) Laura Rothstein, *Disabilities and the Law* § 1:9 (4th ed.) 2014.

[www.westlaw.com;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089838](http://www.westlaw.com;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089838).

74)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Benefi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ttp://www.ssa.gov/disability/> (2014. 6. 15. 최종방문).

75) 인터넷 영어사전에서는 “보족적(補足的) 소득 보장”으로 번역이 되고 있다. Matthew Diller, 76 *Tex. L. Rev.* 1003.

애인 의료보험제도), Medicaid(저소득층 의료보험제도) 등이 있다.

## 2. 장애인법

장애인법(ADA)<sup>76)</sup>은 인종, 종교, 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1964년의 시민권법(Civil Rights Act)과 1973년의 재활법(Rehabilitation Act)의 제504조<sup>77)</sup>를 모델로 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호하는 대표적인 연방법이다.<sup>78)</sup> 고용, 공공서비스, 편의시설, 교통시설, 통신시설에의 접근성을 보장하여, 장애인이 취업, 이동, 상품구매, 서비스 이용 등의 경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동등한 권리(equal rights)’가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이다.<sup>79)</sup>

그러나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률이면서, 장애인 인권을 증진하는 국제조약의 모범이 되었던 법이었으나, 장애인법에 근거한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범주 등에 대한 법원 해석이 일관되지 않아 논란이 많았다.<sup>80)</sup> 2008년에 장애인개정법(ADA Amendments Act of 2008, ADAAA)<sup>81)</sup>으로 개정되면서, 1990년 장애인법 제정 이후의 문제점을 제2조 주(註)에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sup>82)</sup> 장애의 정의(definition)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 장애인법상의 장애와 재활법상의 장애가 서로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sup>83)</sup> 또한 장애인법 제3조<sup>84)</sup>

76)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42 U.S.C. §§ 12101 et seq.

77)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78) [http://www.ada.gov/ada\\_intro.htm](http://www.ada.gov/ada_intro.htm)

79) [http://www.ada.gov/ada\\_intro.htm](http://www.ada.gov/ada_intro.htm)

80) “미국장애인법(ADA)은 아직도 논란 중”, 에이블뉴스 (2008. 5. 10. 최종방문)

<http://www.ablenews.co.kr/ablewindow/liveservice/View.aspx?ConnectId=kaidd&NewsCode=16755>

81) P.L. 110-325.

82) 42 U.S.C. § 12101 note (ADA § 2 note) (Findings and Purposes).

83) 42 U.S.C. § 12101 note (a)(3).

84) 42 U.S.C. § 12102 (Definition of disability); 42 U.S.C. § 12102(a)(A) (Disability). 1990년 장애인법은 제3조 제2항에 ‘장애’의 정의가 있다.



에서 ‘장애’는 “실질적으로 한 개인의 중요한 ‘생활 활동(life activities)’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상당히 제약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sup>85)</sup>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 중 ‘실질적으로 제약하는(substantially limits)’의 용어해석에 있어, 연방대법원이 장애의 정의를 협의로 해석하여, 장애의 범주가 좁아짐에 따라, 장애인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sup>86)</sup> 따라서,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제한적인 협의의 판결 해석을 배척하고,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 등 정부기관의 시행규칙 제정과 시행에 있어 올바른 지침을 주기 위해 2008년 개정법에서 개정취지와 문제된 연방대법원 판결의 적용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sup>87)</sup>

장애인법 조항은 미국 연방법전의 대분류 체계에서 제42편(Title) ‘보건 및 복지(public health and welfare)’편 제126장(Chapter) ‘장애인을 위한 기회균등(equal opportunit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아래에,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공공교통, 편의시설이용의 차별, 사인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이나 교통수단 이용에 차별금지 조항이 편제되어 있다. 다만, 통신시설의 접근성에 관한 규정은 연방법전 제47편 전기통신에 편제되어 있다.

2008년 장애인개정법의 기본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은 같다.<sup>88)</sup>

전 문<sup>89)</sup>

85) “The term ”disability“ means, with respect to an individual (A) a physical or mental impairment that substantially limits one or more major life activities of such individual;....” <http://www.ada.gov/pubs/adastatute08.htm>.

86) 42 U.S.C. § 12101 note (a)(4) and (5).

87) 42 U.S.C. § 12101 note (a)(8) and (b)(6).

88) 장애인법은 미국연방법전에 의한 분류체계에서는 Title(편), Chapter(장), Subchapter(절), Section(조)의 순으로 정리되어 있으나, ‘장애인법’이라는 개별명칭 아래에서는 Title과 Section으로 편제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개별명칭에 의한 분류를 따르고, 한국에 먼저 소개된 자료의 영문해석을 존중하여, Title은 ‘장’으로 번역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영역을 기준으로 한 외국 사례 연구 - 미국 장애인법과 호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2011, p. 14.



제 4 장 외국의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

제 1 장(Title I) 고용<sup>90)</sup>

제 2 장(Title II) 공공서비스<sup>91)</sup>

제 1 절(Subtitle A) 차별금지과 기타 일반규정<sup>92)</sup>

제 2 절(Subtitle B) 공공기관의 공공교통 제공시 차별 관련 조치<sup>93)</sup>

제 1 부(Part I) 항공기 또는 철도운영 이외의 공공교통<sup>94)</sup>

제 2 부(Part II) 도시간, 출퇴근용 철도의 공공교통<sup>95)</sup>

제 3 장(Title III) 사설기관의 공공편의시설 및 공공서비스<sup>96)</sup>

제 4 장(Title IV) 전신, 전화 등 전기통신 서비스<sup>97)</sup>

제 5 장(Title V) 기타 규정<sup>98)</sup>

### 3.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제

장애인의 접근성 차별금지의 법제화는 초기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시설물이나, 전기, 전화 등의 통신에 대한 접근성의 차별금지법이 주류였으나, 최근에는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매체의 접근성의 문제,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 자체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또한 동등권, 시민권적 차원에서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와 접근성 문제와 연결시켜 법제화하였다.

---

89) 42 U.S.C. §§ 12101~12103.

90) Employment. ADA §§ 101~107; 42 U.S.C. §§ 12111~12117.

91) Public Services.

92) Prohibition Against Discrimination and Other Generally Applicable Provisions. ADA §§ 201~204.

93) Actions Applicable to Public Transportation Provided by Public Entities Considered Discriminatory.

94) Public Transportation Other Than by Aircraft or Certain Rail Operations. ADA §§ 221~230.

95) Public Transportation by Intercity and Commuter Rail. ADA §§ 241~245.

96) Public Accommodations And Services Operated By Private Entities. ADA §§ 301~309.

97) Telegraphs, Telephones, And Radiotelegraphs. ADA §§ 401~402. 통신시설 이용시 접근성 편의에 관한 규정으로 미국 연방법전 제47편에 편제되어 있다.

98) Miscellaneous Provisions. ADA §§ 501~513.

미국의 장애인법(ADA)은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는 종합적인 법으로, 공공 또는 민간의 교통, 통신, 기타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이용에 장벽을 제거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호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법외에도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으로,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법(Twenty-Fir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of 2010)”<sup>99)</sup> 등은 통신 매체 또는 ‘정보’ 자체에 대한 접근성에 관한 법으로 볼 수 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선거접근성법(Voting Accessibility for the Elderly and Handicapped Act)”과 “국가유권자등록법(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은 장애인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건축장애물법(Architectural Barriers Act)”은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항공운송접근법(Air Carrier Access Act of 1986, ACAA)”은 공항이나 기내의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은 물론, 항공권 구매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접근성에 관한 문제는 특정 장소, 특정 분야로 구분해서 법제화하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이라 할 수 있다.

## (1) 정보통신의 접근성 보호

### 1) 통신법

통신법은 “1934년 정보통신법(Communications Act of 1934)”을 근거로, 60년이 지난 후 대대적인 정비를 거쳐 “1996년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으로 개정되었다. 장애인에 관한 조항은 통신법 제255조<sup>100)</sup>와 제251(a)(2)조<sup>101)</sup>이다. 통신법의 장애인관련 조항은 장애인법

99) Pub. L. No. 111-260, 124 Stat. 2751 (2010) (as codified in various sections of 47 U.S.C.). (2010. 10. 8. 제정) (S. 3304, 111th Cong.)

<http://www.fcc.gov/encyclopedia/twenty-first-century-communications-and-video-accessibility-act-0> (2014. 6. 14. 최종방문).

100) Telecommunications Act, § 255. Acces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ADA) 제4장의 통신시설 접근 시 차별금지<sup>102)</sup>와는 다른 조항이다. 장애인법에서는 청각장애와 언어장애자를 위해, 통신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술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지만, 통신법은 특정 장애인에 국한된 통신서비스가 아니라, 모든 장애인의 통신시설 이용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통신법은 통신기기 제조업체나 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한다. 제조업체나 서비스 제공자는 통신서비스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에서, 장애를 가진 소비자나 이용자가 접근가능(accessible), 사용가능(usable), 호환가능(compatible)한 통신기기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조해야 한다.<sup>103)</sup>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의 시행규칙은 통신기기의 범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신망 시설과 “고객택내장치(customer premises equipment)”<sup>104)</sup>에 적용되며, 고객택내장치는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 있는 통신시설이나 장치를 말하여, 일반전화, 휴대전화, 팩스, 페이지, 통화중 대기 서비스, 교환서비스 등이 포함된다.<sup>105)</sup>

## 2)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법

1980년대와 90년대에는 ‘장애인법(ADA)’에 의해 장애인의 전화, TV 등의 전기통신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보호할 수 있었으나, 장애인법만으로는 급격하게 변화는 웹, 디지털, 모바일 혁신적 기술매체에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제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법(The 21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of 2010, CVAA)<sup>106)</sup>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획득

101) Telecommunications Act, § 251(a)(General Duty of Telecommunications Carriers).

102) 47 U.S.C. § 225.

103) <http://www.fcc.gov/guides/telecommunications-access-people-disabilities>.

104) 顧客宅内装置. ‘고객구매장치’로도 번역되고 있다.

105) <http://www.fcc.gov/guides/telecommunications-access-people-disabilities>

106) Public Law 111-260 (2010. 10. 8. 대통령 서명).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인터넷 통신서비스 이용이나, 새로 개발된 통신기기 사용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의 법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는 3천6백만명의 청각장애인, 2천5백만의 시각장애인이 있으며, 이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통신시설에의 접근에 한계가 있다. 미국인의 65%가 가정에 인터넷이 있는 반면, 장애인의 경우 42%만이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부분적으로 신체적 장애로 인한 것으로 보고, 2010년 국가광대역계획(National Broadband Plan)은 국회와 연방통신위원회에 광대역기술 발전에 맞추어 접근성관련 법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추천했다.<sup>107)</sup>

CVAA은 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장애인이 광대역통신제품이나 서비스에 제한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도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2장은 장애인도 시청이 가능한 TV나 인터넷의 비디오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TV 프로그램에 자막이 있어 청각장애인이 TV 시청이 가능했다면, 해당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도 다시 볼 수 있도록 인터넷 프로그램도 자막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TV를 통해 911(긴급전화번호) 서비스나 긴급정보에 접근가능하도록 한다.<sup>108)</sup>

## (2) 유권자의 선거권 보호를 위한 접근성 보장 법제

### 1) 노인과 장애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선거접근성법(Voting Accessibility for the Elderly and Handicapped Act of 1984)”<sup>109)</sup>은 장애인과 노인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을 시민권 보호차원의 법

107) <http://www.fcc.gov/encyclopedia/twenty-first-century-communications-and-video-accessibility-act-0> (2014. 6. 14. 최종방문).

108) <http://www.fcc.gov/encyclopedia/twenty-first-century-communications-and-video-accessibility-act-0>.

109) 42 U.S.C. §§ 1973ee et seq.

이라 할 수 있다. 주와 지방정부는 연방선거에서 장애인이 물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투표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장애인 출입이 불가능한 장소를 투표장소로 정했을 때는 투표 당일 다른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투표 등록이나 투표 시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보조하거나, 투표정보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이 선거관련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전신타자기(teletypewriters)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신기기(Telecommunications Devices for the Deaf, TDD)를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sup>110)</sup>

## 2) 국가유권자등록법

“국가유권자등록법(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NVRA)”<sup>111)</sup>은 미국인 모두에게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등록이나 투표권 행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동법에 의해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 FEC)는 주 정부가 동법에 따라 행정지도하고, 국가가 유권자등록을 우편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할 의무가 있다. 주정부는 해당 정부에서 별도로 사용하는 유권자 등록 방식이 있다고 하여도, 연방선거의 유권자 등록은 다른 방법, 즉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에 유권자 등록을 하거나, 우편으로도 유권자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1995년 1월 발효될 시점에는 44개주와 District of Columbia 주에만 적용되었다. 유권자 등록제도가 없는 주는 이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없었고, 당시 주의 헌법과 충돌되는 주는 주의 헌법 개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sup>112)</sup>

---

110) [http://www.eac.gov/voter\\_resources/resources\\_for\\_voters\\_with\\_disabilities.aspx](http://www.eac.gov/voter_resources/resources_for_voters_with_disabilities.aspx);  
<http://www.nyc.gov/html/mopd/html/laws/vaeha.shtml>.

111) 42. U.S.C. §§ 1973gg et seq. 일명 “Motor Voter Act(자동차 유권자법)”로도 지칭하는데, 유권자 등록을 운전면허증 신청이나 갱신할 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http://www.justice.gov/crt/about/vot/42usc/subch\\_ih.php#anchor\\_1973gg](http://www.justice.gov/crt/about/vot/42usc/subch_ih.php#anchor_1973gg).

112) [http://www.justice.gov/crt/about/vot/nvra/activ\\_nvra.php](http://www.justice.gov/crt/about/vot/nvra/activ_nvra.php).

### (3) 시설물 이용관련 접근성 보장 법제

#### 1) 공정주택공급법

“공정주택공급법(Fair Housing Act, FHA)”<sup>113)</sup>은 공공 또는 민간주택을 매매하거나 거주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다. 장애를 이유로 입주를 못하게 하거나, 장애인에게 주택매매 또는 임대 시, 가격, 계약조건 등을 비장애인과는 다르게 요구할 수 없다. 장애인 입주자에게는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주차 구역을 설정하거나,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문턱을 낮추거나, 목욕탕에 가로대를 설치해야 한다. 연방정부가 지원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정부보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sup>114)</sup>

#### 2) 건축장애물법

“건축장애물법(Architectural Barriers Act of 1968, ABA)”<sup>115)</sup>은 1968년에 제정되었고, 1978년 개정된 법으로 연방정부의 기금이나 대출로 설계, 건축 또는 변경되거나, 연방정부기관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건물이나 시설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물리적 접근성이 확보되었는가에 대한 기준은 연방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의한다.<sup>116)</sup> 이 법은 신축 건물, 재건축 건물, 임대건물에만 적용된다.

---

113) 42 U.S.C. §§ 3601 et seq.

114) [http://portal.hud.gov/hudportal/HUD?src=/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disabilities/sect504](http://portal.hud.gov/hudportal/HUD?src=/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disabilities/sect504).

115) 42 U.S.C. §§ 4151 et seq.

116) <http://www.gsa.gov/portal/category/21630>. Architectural Barriers Act Accessibility Standard (ABAAS).

### 3) 항공운송접근법

“항공운송접근법(Air Carrier Access Act of 1986, ACAA)”<sup>117)</sup>은 민간 항공회사가 공항이나 기내에서 장애인 고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1989년에 제정되었으나, 항공운송의 영업활동이 변화됨에 따라, 항공운송접근법과 관련 시행규칙은 지속적으로 수차례 개정되었다. 최근 개정된 법은 2009년 5월에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국 항공회사뿐만 아니라, 외국항공사에도 적용이 된다는 점이다. 장애인이 공항과 기내의 시설물, 서비스 이용에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공항과 기내에서는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호흡보조기나 심리적 또는 정신적으로 동물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48시간 전에 사용가능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sup>118)</sup>

항공운송접근법 관련하여 최근에 추가된 사항으로, 2013년 11월 미국 교통부는 항공여행 도중에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과 인터넷을 통한 항공여행 정보의 접근성의 한계로 인한 장애인 차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항공운송접근법 최종규칙<sup>119)</sup>을 발표하였다. 항공권 판매상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항공권 가격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영세업체가 아닌 항공권 판매업체는 장애인을 위해 인터넷 판매가격을 공개하여야 한다.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불공정, 기만적 영업행위로 고발당할 수 있다. 이 최종규칙은 2013년 12월 12일 이후, 60명 이상의 좌석이 있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미국항공사뿐만 아니라, 외국항공사에도 적용된다.<sup>120)</sup>

---

117) 49 U.S.C. § 41705 (Discrimination against handicapped individuals).

118) <http://www.southwestada.org/html/publications/ebulletins/legal/2009/may2009.html>

119)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in Air Travel, ACAA Final Rule, 14 CFR Part 382.

120) <https://www.sbbartgroup.com/blog/2013/12/02/air-carrier-access-act-final-rule-and-web-accessibility-requirements/>



## 4. 장애인 자립 관련 법제

### (1) 재활법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sup>121)</sup>은 장애인의 고용이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 재활 프로그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방법이다. 재활서비스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과 서비스 보조금을 지원한다. 국립장애재활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Research)와 국립장애위원회(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의 연구 활동도 지원한다. 재활법 중 연방정부의 장애인 차별금지 조항은 제501조, 제503조, 제504조<sup>122)</sup>이다. 제504조는 처음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주창한 조항이기도 하다.<sup>123)</sup> 제504조는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자가 장애로 인해 고용, 교육, 건물출입, 보건, 복지, 사회서비스 등에서 차별 받는 것을 금지한다.<sup>124)</sup> 제504조는 장애인법(ADA)의 모체이었고, 여러 다른 장애인 관련 법제의 근거 조항이 되고 있다. ‘장애’에 대한 정의는 재활법 제504조와 장애인법의 정의가 같다.

제504조를 다른 모든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프로그램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해 1978년 ‘재활, 종합서비스, 발달장애법(Rehabilitation, Comprehensive Services,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of 1978)’<sup>125)</sup>

121) 29 U.S.C. §§ 701 et seq.

122) 29 U.S.C. § 794 (Nondiscrimination under Federal grants and programs). Sec. 504. No otherwise qualified handicapped individual in the United States, as defined in Section 7 (6), shall, solely by reason of his handicap, be excluded from the participation in, be denied the benefits of, or be subjected to discrimination under any program or activity receiving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123) Ruth Colker and Adam A. Milani, *Federal Disability Law in a Nutshell*, West Thomson, 2010, p. 34.

124) 29 U.S.C. § 794(a).

125) 29 U.S.C. § 701.



이 추가적으로 개정되면서,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고용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물 건축법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sup>126)</sup>

## (2) 장애인 교육 관련 법제

공공교육기관의 초·중·등 장애아동과 대학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의 장애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은 “장애아동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EAHCA)”,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재활법 제504조, 장애인법 제2장(Title II. Public Services)이 있다. 장애아동교육법(EAHCA)은 1975년에 제정되었으며, 1990년에 개정되면서, “장애인교육법(IDEA)”<sup>127)</sup>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2004년에는 “장애인교육개선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으로 개정되었으나, 주로 IDEA로 명명되고 있다.

“장애인교육법”에 의거하여 연방정부 교육부로부터 연방기금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주정부는 장애아동을 위해, 특정수준에 맞는 특수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한다.<sup>128)</sup> 장애아동은 “적절한 무상의 공공교육(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을 받을 권리가 있고,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은 ‘제한적 환경을 최소화(least restrictive environment)’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sup>129)</sup> 통합교육제도에 따라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과 같이 정상수업을 받을 수 있으나, 장애아동이 보조기구나 서비스를 부수적으로 지원받았음에도 정상수업에서 만족할 만한 학습효과를 얻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중대한 경우에만 장애아동을 특별학습

126) [http://www.eeoc.gov/eeoc/history/35th/thelaw/rehab\\_amendments\\_1978.html](http://www.eeoc.gov/eeoc/history/35th/thelaw/rehab_amendments_1978.html).

127) 20 U.S.C. §§ 1400 et seq.

128) Laura Rothstein, *Disabilities and the Law* § 1:24 (4th ed.).

129) Mark C. Weber, *Understanding Disability Law*, Newark: LexisNexis, 2007, pp. 107~112.

이나 정상교육환경에서 분리할 수도 있다.<sup>130)</sup> 「장애인교육법」은 교육의 주류화에 장애학생을 통합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정책을 택하고는 있으나, 장애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교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통합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이 나뉘고 있다.<sup>131)</sup>

공공고등교육기관에서의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행위는 재활법 제504조와 장애인법 제2장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연방정부의 기금을 받는 사립학교에는 재활법 제504조를 적용한다.<sup>132)</sup>

## 5. 사회보장법의 장애인복지 재정지원 제도

(1)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sup>133)</sup>은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 불안 상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아래 1935년에 제정되었다.<sup>134)</sup> 이 법은 노인 퇴직금을 국세로 조성하고, 실업자보험제도를 구축하는 주정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빈곤층을 위한 재정지원금을 주정부에게 제공하는 것이다.<sup>135)</sup> 뉴딜정책에서 기인된 미국의 사회복지제도는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제도와 사회복지(social welfare)의 두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 국가의 노동인력의 필요성과 빈곤층의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충돌함에 따라, 복지혜택 대상자의 자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산이나 수입에 근거하여 자격여부를 결정하였다.<sup>136)</sup>

130) Id., p. 112.

131) Id., pp. 112~113.

132) Mark C. Weber, Understanding Disability Law, Newark: LexisNexis, 2007, p.122.

133)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Benefi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ttp://www.ssa.gov/disability/> (2014. 6. 15. 최종방문).

134) Jeffrey S. Wolfe and Lisa Proszek, Social Security Disability and the Legal Professional, New York: Thomson, 2003, p. 2.

135) Id.

136) Matthew Diller, Entitlement and Exclusion: The Role of Disability in the Social Welfare System, 44 UCLA L. Rev. 361 (December, 1996), p. 366.

(2) 1950년대에 장애인을 위한 연금제도가 소개되었다. “사회보장장애연금(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sup>137)</sup>은 근무지를 통해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일정기간 납부한 경우, 퇴직연령에 이르지 않아 퇴직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퇴직자나, 장애로 인해 더 이상 일을 계속하지 못하여 퇴직하는 장애인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취업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직장을 통해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SSDI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70년대에 “추가보장급여(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sup>138)</sup>제도가 신설되었다.

(3) SSI는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실명자 또는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정부보조금이다.<sup>138)</sup> 따라서 SSDI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장애인은 SSI를 신청할 수 있으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인지, 재산은 얼마인지 등에 대해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하는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sup>139)</sup>

“사회보장장애연금(SSDI)”과 “추가보장급여(SSI)”은 현재까지 지속되는 정부지원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또는 장애인을 위한 순수한 ‘복지’제도로 볼 수 있는지는 의견이 다양하다. 특히 SSDI는 일정기간 일을 한 직장인이 자신이 납부한 사회보장세로 형성된 기금에서 장애로 인해 퇴직할 경우, 일부를 돌려받는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복지’제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sup>140)</sup>

또한, SSDI와 SSI의 수급대상자를 선정할 때, 의료기준에 따라 장애의 범주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수급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려운 점

---

137) 42 U.S.C. §§ 401~434; Social Security Act, TITLE II - Federal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Benefits. [http://www.ssa.gov/OP\\_Home/ssact/title02/0200.htm](http://www.ssa.gov/OP_Home/ssact/title02/0200.htm).

138) 42 U.S.C. §§ 1381~1383f; Social Security Act, Title XVI -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For The Aged, Blind, And Disabled. [http://www.ssa.gov/OP\\_Home/ssact/title16b/1600.htm](http://www.ssa.gov/OP_Home/ssact/title16b/1600.htm).

139) <http://www.ssa.gov/pubs/EN-05-11000.pdf>.

140) Mark C. Weber, Disability Rights, Welfare Law, 32 Cardozo L. Rev. 2483 (July, 2011), pp. 2499 ~ 2500.

이 있다.<sup>141)</sup> 특히 SSI는 재정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므로, 장애인의 자산이나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4) 사회보장법에 의한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은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담당한다. 사회보장국은 처음에는 연방정부의 보건인력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에 있었으나, 1995년에 독립되었다. 장애인 의료지원제도는 “Medicare(노인 및 장애인 의료보험제도)”와 “Medicaid(저소득층 의료보험제도)”가 있으며 담당기관은 독립적인 연방기관인 “건강보험재정국(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sup>142)</sup>이다.

(5) 장애인의 복지법제를 시민권적 접근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로 장애인이 복지혜택을 받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sup>143)</sup> 장애의 범주를 좁게 해석하는 의료모델에 의한 장애 여부 판단을 지양하고, 소액을 지급하는 장애수당의 경우, 수급자를 탈락시키고 지원금액을 감액하기 위해 복잡한 재산 조사방법으로 수급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sup>144)</sup> 장애수당을 일부 지급하거나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방안, 장애인을 위한 재택 돌봄 서비스, 특수한 주택 제공 등 현물지원방법, 장애근로자에게 세금공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sup>145)</sup>

---

141) Id., pp. 2492 ~ 2493.

142) <http://www.thebody.com/content/art13091.html>.

143) Mark C. Weber, Disability Rights, Welfare Law, 32 Cardozo L. Rev. 2483 (July, 2011), 2499 ~ 2500.

144) Id., pp. 2509 ~ 2513. Benefit Eligibility Screening Tool(BEST). <http://www.benefits.gov/ssa>.

145) Weber, Disability Rights, Welfare Law, pp. 2509 ~ 2513.

## 6. 소 결

미국의 「장애인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성공적인 법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장애인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어렵고 사회의 변화와 통합을 이끌어내기에는 차별금지법은 한계가 있다.<sup>146)</sup> 예를 들어, 공공편의시설의 장애인 차별 소송의 경우, 법적 구제수단으로 차별당사자에 대한 시행명령으로 그치고 있는데, 만약 원고인 장애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부가 장애인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해 준다면, 장애인측 변호사가 수임료를 확실히 기대할 수 있기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소송을 제기하는 동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sup>147)</sup>

고용차별의 경우에도 장애인법에서 손해배상금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으며, 고용주에 대한 ‘합리적 편의시설’ 제공 여부에 대한 소송에는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고용차별 중에서도 채용단계에서의 차별은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처음부터 빼앗는 것이므로, 채용단계의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다른 고용차별보다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으나,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는 해고와 관련된 차별소송을 주로 다루고 있어, 채용단계 차별소송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sup>148)</sup>

또한 장애인을 위한 차별금지나 편의시설 개선만으로는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장애인법에 의한 법집행이 부족하였다기 보다는, 장애인법이 차별당사자의 부작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장애

---

146) Samuel R. Bagenstos, *Law and the Contradictions of the Disability Rights Movement*, Yale University Press, 2009, p. 131.

147) Bagenstos, *Id.*, p. 132.

148) *Id.*, pp. 132~135.

인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본다.<sup>149)</sup> 따라서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사회복지제도의 통합적인 접근방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sup>150)</sup>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보고, 고용인원수 설정이나 보조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공공건강보험에서 장애인의 수급자격이나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sup>151)</sup>

또한 미국의 장애인관련 법제정 연혁과 현황을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관련 법제의 방향성과 그 내용에서 우리보다 시기적으로 앞서고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제 2 절 일 본

### 1. 개 관

일본의 장애인복지 관련법으로는 「장애인기본법」, 「신체장애인복지법」, 「지적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지원법」,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 「장애인 학대 방지·장애인의 양호인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 등에 의한 장애인 취업시설 등으로부터의 물품 등의 조달 추진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149) Id., pp. 136.

150) Mark C. Weber, Disability and the Law of Welfare: A Post-Integrationist Examination, 2000 U. ILL. L. Rev. 889, 922~923.

151) Bagenstos, Law and the Contradictions of the Disability Rights Movement, pp. 136~142.

## 2. 법제현황<sup>152)</sup>

### (1) 장애인기본법<sup>153)</sup>

#### 1) 개 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기본적인 권을 향유하는 소중한 개인으로서 존중된다는 이념에 따라 모든 국민이 장애의 유무에 따라 분리되지 않고 상호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면서 공생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의 지원 등을 위한 시책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국가·지방공공단체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의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의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1970년에 제정된 것으로 총 4장 3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지원 등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지원 등을 위한 시책은 장애인의 성별·연령·장애상태와 생활실태에 따라 유기적인 연계 하에 종합적으로 책정 및 실시되어야 하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장애인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제10조)

---

152) <http://law.e-gov.go.jp/cgi-bin/idxsearch.cgi>(최종방문 2014.10.28)

153) 1970.5.21제정 법률 제84호, 최종개정: 2013.6.26. 법률 제65호



## 나. 장애인 기본계획의 수립

정부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지원 등을 위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위한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장애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11조제1항).

## 다. 의료·간호 등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회복하고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혜택 및 재활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의료 및 재활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촉진해야 한다(제14조제1항 및 제2항).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이 그 성별·나이·장애상태 및 생활실태에 따라 의료·간호·보건·생활지원과 그 밖의 자립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4조제3항).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시책을 강구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기술 직원과 그 밖의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갖는 직원을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4조제4항).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의료나 간호의 급부 또는 재활의 제공을 실시함에 있어 장애인이 가능한 한 그 가까운 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그 인권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제14조제5항).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복지용구 및 신체장애인보조건의 급부 또는 대여와 그 밖의 장애인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4조제6항).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전항에 규정하는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복지용구의 연구 및 개발, 장애인 보조건의 육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제14조제7항).



라. 연금 등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연금·수당 등의 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제15조).

마. 교육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이 그 연령 및 능력에 따라 그 특성을 감안한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장애인인 아동 및 학생들이 장애인이 아닌 아동 및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개선 및 충실을 도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제16조제1항).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앞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인 아동 및 학생과 그 보호자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가능한 한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제16조제2항).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인 아동 및 학생과 장애인이 아닌 아동 및 학생들과의 교류 및 공동 학습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그 상호 이해를 촉진해야한다(제16조제3항).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하여 조사 및 연구와 인력의 확보 및 자질의 향상·적절한 교재 등의 제공·학교 시설의 정비와 그 밖의 환경의 정비를 촉진해야한다(제16조제4항).

사. 치료교육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인 자녀가 가능한 한 가까운 장소에서 치료교육과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제17조제1항).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치료교육에 관하여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가지는 직원의 육성과 그 밖의 환경의 정비를 촉진해야한다(제17조제2항).

#### 아. 직업상담 등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다양한 취업기회를 확보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개별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 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및 직업소개의 실시와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제18조제1항).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의 다양한 취업기회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전항에 규정하는 시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촉진하여야한다(제18조제2항).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작업활동의 장소 및 장애인 직업훈련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와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제18조제3항).

#### 아. 고용의 촉진 등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및 사업자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우선 고용과 그 밖의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제19조제1항). 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하여 그 가지는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적절한 고용 기회를 확보함과 동시에 각각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고용관리를 함으로써 그 고용안정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제19조제2항).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그 고용촉진 및 지속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이 고용되는 것에 따른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성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제19조제3항).

#### 자. 주택의 확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주택의 확보 및 장애인의 일상생활 적

응을 위한 주택의 정비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제20조).

차. 공공시설의 장벽제거(barrier-free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도모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스스로 설치하는 관공서시설·교통시설(차량·선박·항공기 등의 이동시설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공공시설에 대해 장애인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구조 및 설비정비 등의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해야한다(제21조제1항). 교통 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공공시설에 대해 장애인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구조 및 설비정비 등의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제21조제2항).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앞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해지는 공공시설의 구조 및 설비의 정비 등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제21조제3항). 국가·지방공공단체 및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는 스스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조를 실시하는 신체장애인보조건의 동반에 대해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도모해야 한다(제21조제4항).

카. 정보이용의 장벽제거(barrier-free화) 등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원활하게 정보를 취득 및 이용하고 그 의사를 표시하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이용하기 쉬운 전자계산기 및 관련 장비와 그 밖에 정보통신기기의 보급·통신 및 방송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장애인의 편의증진·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의 정비·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증대하는 자의 양성 및 파견 등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제22조제1항).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재해와 그 밖의 비상시의 사태의 경우 장애인에 대하여 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한편, 행정의 정보화 및 공공분야에서의 정보 통신 기술의 활용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한다(제22조제2항). 전기통신 및 방송과 그 밖의 정보 제공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 및 전자계산기 및 관련 장비와 그 밖에 정보통신기기 제조 등을 실시하는 사업자는 당해 서비스의 제공 또는 해당 장비 제조 등을 행함에 있어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제22조제3항).

#### 타. 상담 등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의사결정 지원에 배려하면서 장애인 및 그 가족과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상담업무·성년후견제도와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시책 또는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거나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23조제1항).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 및 그 가족과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의 각종 상담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상호의 유기적인 연계 하에 필요한 상담체제의 정비를 도모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가족에 대하여 장애인의 가족이 서로 의지하기 위한 활동지원과 그 밖의 지원을 적절히 실시한다(제23조제2항).

#### 파. 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거나 장애인의 자립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상의 조치·공공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제24조).

하. 문화적 조건의 정비 등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원활하게 문화예술활동·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와 그 밖의 모든 조건의 정비·문화예술·스포츠 등에 관한 활동의 조성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제25조).

거. 방재와 방법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안심하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연령·장애상태와 생활실태에 따라 방재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제26조).

너. 소비자로서의 장애인의 보호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소비자로서의 이익의 옹호 및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의한 정보의 제공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제27조제1항). 사업자는 장애인의 소비자로서의 이익의 옹호 및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의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제27조제2항).

더. 선거 등의 배려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법률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해지는 선거·국민심사 또는 투표에서 장애인이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의 시설 또는 설비정비와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한다(제28조).

러. 사법 절차에서의 배려 등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이 형사사건 또는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이 된 경우 또는 법원

의 민사사건·가사사건 또는 행정사건에 관한 절차의 당사자와 그 밖에 관계인이 된 경우에는 장애인이 그 권리를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각 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의 수단을 확보하도록 배려하고, 관계 직원에 대한 교육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제29조).

#### 며. 국제 협력

국가는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의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국제적 협조 하에 추진하기 위해 외국 정부·국제기구 또는 관계 단체 등의 정보 교환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제30조).

#### 버. 장애인 정책위원회의 설치

내각부에 장애인 정책위원회를 두고, 장애인 기본계획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을 처리하고, 해당 규정사항에 관하여 조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각총리대신 또는 관계 각 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하며, 장애인 기본계획의 실시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총리를 통해 관계 각 대신에게 권고한다(제32조제1항 및 제2항).

### (2) 신체장애인복지법<sup>154)</sup>

#### 1) 개 관

신체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과 함께 신체장애인의 자립과 사회경제활동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체장애인을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보

154) 1949.12.26제정 법률 제283호, 최종개정: 2014.6.13. 법률 제67호

호함으로써 신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제1조)을 목적으로 1949년에 제정되었고 총 5장 48개조로 구성되고 있다.

## 2) 주요내용

### 가. 정 의

“신체장애인”이라 함은 별표에 따른 신체상 장애가 있는 18세 이상의 자로서 도도부현지사로부터 신체장애인 수첩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신체장애인복지법 제4조).

### 나. 장애인 자립에의 노력 및 기회의 확보, 국가·지방공공단체 및 국민의 책무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극복하여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회, 경제,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조 노력을 하여야 하고 또한 이러한 참여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지원과 보호(이하 “갱생원호”라 한다)를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국민의 상호연대의 이념에 따라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제2조제1항·제2항 및 제3조).

### 다. 신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실시기관 등

신체장애인 보호 실시기관 등에는 시정촌(제9조), 복지사무소(제9조의), 신체장애인재활상담소(제11조), 신체장애인복지사(제11조의2), 그리고 신체장애인상담원(제12조의3) 등이 있다.

#### ① 신체장애인 보호의 실시자(시정촌)

신체장애인 또는 간호자에 대한 지원·보호는 신체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정촌이 실시자가 되며(제9조제1항). 시정촌은 신체장애인의 복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신체장애인을 상담하여 생활의 실정·환경 등을 조사하고, 재활지원의 필요 유무 및 종류를 판단하



여 본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회적 재활의 방법을 지도한다(제9조제5항).

## ② 복지사무소 및 신체장애인재활상담소

i) 시정촌이 설치한 복지사무소 또는 그 장은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①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거나 그 상담에 응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고, ② 신체장애인 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③ 신체장애인의 상담에 따라 그 생활실정, 환경 등을 조사하고 재활지원의 필요여부 및 그 유형을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회적 재활방법 지도 및 이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는 시정촌장의 업무를 수행한다(제9조의2 제1항).

ii) 도도부현은 신체장애인의 재활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그리고 시정촌의 적절한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신체장애인재활상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체장애인재활상담소는 시정촌의 지원 실시에 관하여 시정촌 상호간의 연락조정, 시에 대한 정보제공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과 이에 따르는 업무, 신체장애인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중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 장애인의 의학적·심리학적 및 직능적 판정, 필요에 따라 보장구의 처방 및 적합판정 업무, 간호급부비 등의 지급필요여부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 지역상담 지원급부비 등의 지급필요여부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제11조제1항 및 제2항).

## ③ 신체장애인복지사 및 신체장애인상담원

i) 도도부현이 설치하는 신체장애인지원상담소에는 신체장애인복지사를 두어야 하며(제11조의2 제1항). 시정촌이 설치하는 복지사무소



에는 신체장애인복지사를 둘 수 있다(제11조의2 제2항). 도도부현의 신체장애인복지사는 신체장애인재활상담소의 장의 명에 따라 시정촌의 지원실시에 관한 연락조정 및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업무 중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제11조의2 제3항). 시정촌의 신체장애인복지사는 당해 시정촌의 복지사무소의 장의 명에 따라 신체장애인의 복지에 관하여 복지사무소의 직원에 대한 기술적 지도, 신체장애인 상담에 따라 생활실정·환경 등을 조사하고 재활지원 필요여부 및 유형을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회적 재활방법의 지도 및 이에 따르는 업무 중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제11조의2 제4항). 시의 신체장애인복지사는 장애인복지사를 두고 있지 않은 복지사무소의 장이 요청하는 전문상담지도에 대해 기술적 원조 및 조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장애인재활상담소에 당해 기술적 원조 및 조언을 구하도록 조언하여야 한다(제11조의2 제5항).

ii) 시정촌은 사회적 신망이 있고 신체장애자 재활지원에 열의와 식견을 갖고 있는 자에 상담원조를 위탁할 수 있으며(제12조의3 제1항), 도도부현은 장애의 특성과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상담원조를 위탁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시정촌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촌의 구역에서 해당 상담원조를 사회적 신망이 있고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활지원에 열의와 식견을 갖고 있는 자에 위탁할 수 있고(제12조의3 제2항), 위탁을 받은 자는 신체장애인상담원이라 칭한다(제12조의3 제3항). 신체장애인상담원은 그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신체에 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제12조의3 제5항).

## 라. 갱생원호

## ① 신체장애인수첩

신체에 장애가 있는 자는 도도부현지사가 정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또는 현 소재지의 도도부현지사에게 신체장애인수첩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15세 미만일 때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한다(제15조 제1항).

## ② 장애복지서비스 제공·장애인지원시설 입소 등의 조치

i) 시정촌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애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급부비 등을 지급받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장애인에 대해 장애복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당 시정촌 이외의 자에게 장애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탁할 수 있다.

ii) 시정촌의 장애인지원시설 등에 입소를 필요로 하는 신체장애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급부비 등을 지급받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체장애인을 당해 시정촌에 설치된 장애인지원시설 등에 입소시키거나 국가·도도부현 또는 기타 시정촌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설치된 장애인지원시설 등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 그 장애인의 입소 또는 입원을 위탁해야 한다(제18조 제1항 및 제2항).

## ③ 맹도견 등의 대여

도도부현은 시각장애가 있는 신체장애자·신체부자유 신체장애인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신체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필요에 따라 맹도견 훈련 시설에서 훈련된 맹도견 또는 안내견훈련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훈련된 안내견 또는 청도견(聽導犬)훈련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훈련된 청도견을 대여하거나 당해 도도부현 이외의 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것을 위탁할 수 있다(제20조).

④ 신체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등

신체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i) 지방공공단체의 신체장애인의 사회참여촉진사업 실시 노력의무(제21조 제1항), ii) 신체장애인의 매점설치신청에 대한 공공시설관리자의 허락 노력 의무(제22조제1항), iii) 신체장애인의 담배 소매판매업 신청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허가 노력 의무(제24조), iv) 신체장애인 제작 물품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구매노력(제2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마. 사업 및 시설

① 사 업

국가 또는 도도부현이외의 자는 신체장애자생활훈련등사업 또는 안내견훈련사업 혹은 청도견(聽導犬)훈련사업(이하 “신체장애자생활훈련등사업등”이라 한다), 그리고 수화통역사업할 수 있다(제26조 및 제27조).

② 시 설

도도부현, 시정촌, 사회복지법인 기타의 자는 신체장애자사회참여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체장애자사회참여지원시설에는 신체장애자사회참여지원사무종사자 양성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제28조). 신체장애자사회참여지원시설 및 양성시설의 설비 및 운영기준은 후생노동성장관이 따라 정하며(제29조), 이러한 신체장애인 시설에는 신체장애인복지센터(제31조), 보장구(補裝具)제작시설(제32조), 맹도견훈련시설(제33조), 시청각장애인정보제공시설(제34조)이 있다.

(3)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sup>155)</sup>

## 1) 개 관

이 법은 정신장애인의 의료와 보호를 행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에 상응하여 그 사회 복귀 촉진 및 자립과 사회경제활동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행하고, 발생을 예방하며 그 밖의 국민의 정신적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노력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국민 정신보건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1950년에 제정되었고, 총 9장 57개조로 구성되고 있다.

## 2) 주요내용

## 가. 정신보건복지센터의 설치 및 업무

도도부현은 정신보건의 향상 및 정신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이하 “정신보건복지센터”라 한다.)을 두며(제6조제1항), 센터는 ①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의 복지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조사 연구, ②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의 복지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중 복잡하고 곤란한 것, 정신의료심사회의 사무, ④ 정신장애자보건복지수첩의 교부(제45조제1항) 신청에 대한 결정 및 「장애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의 종합적 지원법」제52조제1항의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인정에 관한 사무 중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 ⑤ 장애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의 종합적 지원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개호급부비 등의 지급요부의 결정에 관한 의견개진 등을 업무로 한다(제6조제2항).

---

155) (1950.5.1.제정. 법률 제123호, 최종개정: 2014.6.25. 법률 제83호)

(4) 지적장애인복지법<sup>156)</sup>

1) 개 관

이 법률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과 함께 지적장애인의 자립과 사회경제활동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적장애인을 지원하고 필요한 보호를 행함으로써 지적장애인의 복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1960년에 제정된 것으로, 총 4장 32개조로 구성되고 있다.

2) 주요내용

가. 지적장애인의 자립에의 노력 및 기회의 확보

모든 지적장애인은 가진 능력을 활용하여 스스로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모든 지적장애인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사회·경제·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제1조의2).

나. 지적장애인재활상담소의 설치와 지적장애인복지사

도도부현은 지적장애인재활상담소를 설치하여야 하며(제12조제1항), 이 상담소에는 지적장애인복지사를 두어야 한다(제13조제1항).

다. 지적장애인상담원

시정촌은 지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적장애인 또는 보호자(배우자·친권을 행하는 자·후견인과 그 밖의 지적장애인을 실제로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의 상담 및 지적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업무를 사회적 명망이 있고 지적장애인에 대한 재활지원에 열의

---

156) 1960.3.31제정. 법률 제37호, 최종개정: 2014.6.4. 법률 제51호

와 식견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를 ‘지적장애인상담원’이라 한다(제15조의2제1항).

### (5) 발달장애인지원법<sup>157)</sup>

#### 1) 개 관

이 법은 발달장애인 심리기능의 적정한 발달 및 원활한 사회생활의 촉진을 위하여 발달장애 증상 발현 후 가능한 한 조기에 발달지원을 행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발달지원을 행하는 것에 관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를 명확히함과 동시에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발달장애인 지원·발달장애인 취업 지원·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에 도움이 되도록 생활전반에 걸친 지원을 도모함으로써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2004년에 제정된 것으로 총 4장 2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 2) 주요내용

##### 가. 정 의

“발달장애”라 함은 자폐증·아스퍼거증후군과 그 밖의 전반적 발달장애·학습장애·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뇌기능 장애이며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낮은 연령에서 발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발달장애인지원법 제2조제1항). “발달장애인”이라 함은 발달장애를 가짐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는 자를 말하며, “발달장애아동”이라 함은 발달장애인 중에서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제2항).

157) 2004.12.10.제정. 법률 제167호, 최종개정: 2012.8.22. 법률 제67호

#### 나. 아동의 발달 장애의 조기 발견 등

시정촌은 「모자보건법」 제12조 및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발달장애의 조기발견에 충분히 유의하여야 하고(제5조제1항), 시정촌의 교육위원회는 「학교보건안전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발달장애의 조기발견에 충분히 유의해야한다 (제5조제1항).

시정촌은 아동에게 발달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해당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을 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해당 아동이 조기에 의학적 또는 심리학적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게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도도부현이 확보한 의료기관과 그 밖의 기관을 소개하거나 조언을 실시한다(제5조제3항). 시정촌은 당해 조치의 대상이 되는 아동과 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필요한 배려를 해야 한다(제5조제4항). 도도부현은 시정촌의 요청에 따라 아동의 발달장애의 조기발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도, 조언과 그 밖의 시정촌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제5조제5항).

#### 다. 조기 발달지원

시정촌은 발달장애아동이 조기의 발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달장애 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 그 상담에 응하여 센터 등을 소개하거나 조언을 하며,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제6조제1항), 또한 당해 조치의 대상이 되는 아동과 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필요한 배려를 해야 한다(제5조제4항 준용). 도도부현은 발달장애아동의 조기의 발달지원을 위해 필요한 체제의 정비를 실시하고, 발달 장애아에 대해 수행되는 발달 지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6조제3항).



라. 보 육

시정촌은 보육의 실시에 있어서는, 발달장애아동의 건전한 발달이 다른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제7조).

마. 교 육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발달장애아동(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으로서는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및 특별지원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이 그 장애 상태에 따라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적 지원, 지원 체제의 정비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제8조제1항),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는 발달장애인의 장애상태에 따라 적절한 교육상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제8조제2항).

바. 방과후 아동건전육성사업의 이용

시정촌은 방과후 아동건전육성사업에 대해서, 발달장애아의 이용 기회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제9조).

사. 취업지원

도도부현은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의 정비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공공직업소개소·지역장애인직업센터·장애인취업생활지원센터·사회복지협의회·교육위원회와 그 밖의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상호 협력을 확보하면서 발달 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취업기회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제10조제1항). 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필요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취업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0조제2항).



아. 지역생활지원

시정촌은 발달장애인이 그 희망에 따라 지역에서 자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 장애인에게 사회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기회의 확보·공동 생활을 영위할 주거와 그 밖의 지역에서 생활을 영위할 거주자의 확보와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11조).

자. 권리옹호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발달장애인이 그 발달장애로 인하여 차별 받는 등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권리옹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제12조).

차. 발달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발달장애아동의 보호자가 적절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아동 상담소 등 관계 기관과 연계를 도모하면서 발달장애인의 가족에 대하여 상담 및 조언과 그 밖의 지원을 적절히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3조).

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도도부현지사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하여금 발달장애의 조기발견·조기발달지원 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조언,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인 개발지원 및 취업지원, 발달장애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발달장애 관련 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연락조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제14조제1항).

(6)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sup>158)</sup>

## 1) 개 관

이 법은 「장애인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신체장애인복지법」, 「지적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복지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기타 장애인 및 장애아의 복지에 관한 법률과 상응하여 장애인 및 장애아가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는 개인으로서의 존엄성에 어울리는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애복지서비스에 관한 급부·지역생활지원사업·기타 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장애인 및 장애아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국민이 상호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2005년에 제정되었으며, 총 10장 115개조로 구성되고 있다.

## 2) 주요내용

## 가. 자립지원급부

자립지원급부는 간호급부비·특례간호급부비·훈련등급부비·특례훈련등급부비·특정장애인특별급부비·특례특정장애인특별급부비·지역상담지원급부비·특례지역상담지원급부비·계획상담지원급부비·특례계획상담지원급부비·자립지원의료비·요양간호의료비·기준해당요양간호의료비·보장구비용 및 고액장애복지서비스 등 급부비를 지급한다(제6조).

---

158) 2005.11.7제정 법률 제123호, 최종개정: 2014.6.25. 법률 제83호

나. 간호급부비 등의 지급결정

간호급부비·특례간호급부비·훈련등급부비 또는 특례훈련등급부비(이하, “간호급부비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시정촌의 간호급부비 등을 지급하는 취지의 결정(이하, “지급결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제19조제1항).

다. 지정장애복지서비스 사업자 및 지정장애인지원시설의 지정

지정장애복지서비스 사업자의 지정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복지서비스 사업을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장애복지 서비스의 종류 및 장애복지서비스 사업 실시 사업소별로 실시한다(제36조제1항).

지정장애인지원시설의 지정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지원시설의 설치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종류 및 당해 장애인 지원시설 입소정원을 정하여 실시한다(제38조제1항).

라. 시정촌 및 도도부현 장애복지계획

후생노동대신은 장애복지서비스 및 상담지원과 시정촌과 도도부현의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제공 체제를 정비하고 자립지원급부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며(제87조제1항), 시정촌은 기본지침에 맞추어 장애복지서비스 제공체제의 확보와 그 밖의 법에 근거한 업무의 원활한 실시에 관한 계획을 정하고(제88조제1항), 도도부현은 기본지침에 맞추어 시정촌 장애복지계획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각 도시를 포함하는 광역적인 견지에서 장애복지서비스 제공체제의 확보와 그 밖의 법에 근거한 업무의 원활한 실시에 관한 계획을 정하여야 한다(제89조제1항).

(7)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sup>159)</sup>

1) 개 관

이 법은 신체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의 고용의무 등에 근거한 고용 촉진 등을 위한 조치·직업재활의 조치·기타 장애인이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종사하는 것 등을 통해 그 직업생활에 있어 자립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1960년에 제정되었으며, 총 5장 91개조로 구성되고 있다.

2) 주요내용

가. 직업재활을 위한 직업지도와 적응훈련 실시

공공직업소개소는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며 장애인에 적합한 직업지도를 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제11조), 도도부현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직자인 장애인에 대하여 능력에 맞는 작업환경 적응훈련을 실시한다(제13조제1항).

나. 장애인직업센터의 설치

후생노동대신은 장애인의 직업생활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직업종합센터·광역장애인직업센터·지역장애인직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 업무를 실시한다(제19조제1항).

---

159) 1960.7.25제정. 법률 제123호, 최종개정: 2014.6.13. 법률 제69호

다. 장애인취업·생활지원센터의 지정

도도부현지사는 직업생활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취업 및 이에 따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지원대상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특정비영리활동법인과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장애인취업·생활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직원업무방법과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업무실시에 관한 계획이 적정한 경우, 또한 계획을 확실하게 수행하기에 충분한 경리적·기술적인 기초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그 밖의 업무 운영이 적당하고 확실하게 수행되고, 지원대상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그 밖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신청에 따라 장애인 취업·생활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제27조제1항).

(8) 국가 등에 의한 장애인 취업시설 등으로부터의 물품 등의 조달 추진 등에 관한 법률<sup>160)</sup>

1) 개 관

이 법은 국가, 독립행정법인 등 지방공공단체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에 의한 장애인 취업시설 등으로부터의 물품 및 용역의 조달 추진 등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기본 방침 및 조달 정책의 수립과 그 밖의 장애인 취업시설 등의 수주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취업시설 등이 공급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수요증진 등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 취업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재택취업장애인 등의 자립 촉진에 이바지하고자(제1조) 함을 목적으로 2013년에 제정된 것으로 총11개조로 구성되고 있다.

160) 2012.6.27제정 법률 제50호, 최종개정: 2013.6.19. 법률 제46호

## 2) 주요내용

## 가. 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독립행정법인 등은 물품 및 용역(이하 물품 등)의 조달에 있어서는 장애인취업시설 등의 수주기회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적정한 사용에 유의하면서 우선적으로 장애인취업시설 등으로부터 물품 등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제3조), 지방공공단체는 그 지역의 장애인취업시설에서 장애인의 취업 또는 재택취업장애인의 취업 실태에 따라 장애인취업시설 등의 수주기회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제1항).

## 나. 장애인 취업시설 등으로부터의 물품 등의 조달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 및 조달정책

국가는 국가 및 독립행정법인 등의 장애인 취업시설 등으로부터의 물품 등 조달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 취업시설 등으로부터의 물품 등의 조달 추진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정하여야 하며(제5조제1항), 이에 따라 각 성 각 청의 장 및 독립행정법인 등의 장은 매년도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물품 등 조달에 관한 정책을 정하여야 하고(제6조제1항), 도도부현·시정촌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은 예산등을 감안하여 매년 장애인 취업시설 등으로부터의 물품 등 조달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정하여야 한다(제9조제1항).

## 다. 공급물품 등에 관한 장애인 취업시설의 정보제공

장애인 취업시설 등은 단독으로 또는 서로 연계하여 또는 공동으로 그 공급물품 등의 구입자 등에 대하여 당해 물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당해 물품 등의 품질향상 및 원활한 공급에 노력하여야 한다(제11조).

(9)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sup>161)</sup>

1) 개 관

이 법은 고령자·장애인 등의 자립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중교통의 여객시설 및 차량 등·도로·야외주차장·공원시설과 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일정한 지구의 여객시설·건축물 등과 이들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역전광장·통로 기타 시설의 일체적인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 등을 강구함으로써 고령자·장애인 등의 이동상 및 시설의 이용상 편의성 및 안전성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2006년 제정된 것으로 총 7장 64개조로 구성된다.

2) 주요내용

가.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기본방침

주무대신은 이동 등 원활화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기본방침에는 이동 등의 원활화의 의의 및 목표에 관한 사항, 이동 등 원활화를 위한 시설 설치 관리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중점정비지구에서의 이동 등 원활화 기본구상의 지침이 되는 사항, 그 밖의 이동 등 원활화의 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제3조제1항 및 제2항).

나. 이동 등 원활화를 위한 시설 설치·관리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

대중교통 사업자·도로관리자·야외주차장관리자·공원관리자 등 시설설치·관리자는 주무 성령이 정하는 이동 등의 원활화를 위해서 필요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3장).

---

161) 2006.6.21제정. 법률 제91호, 최종개정: 2014.6.13. 법률 제69호

#### 다. 시정촌의 중점정비지구에서의 이동 등 원활화에 관한 기본구상 작성

시정촌은 기본방침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당해 시정촌의 중점 정비지구에 대한 이동 등 원활화에 관한 사업의 중점적이고 일체적인 추진에 관한 기본구상을 만들 수 있으며, 이 기본 구상은 중점정비지구 위치 및 지역, 생활관련시설 및 생활관련경로 및 이들의 이동 등 원활화에 관한 사항, 이동 등 원활화를 위해 실시해야 할 특정사업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기타 중점정비지구에서의 이동 등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며(제25조제1항 및 제2항), 시정촌은 기본구상작성에 관한 협의 및 실시에 관한 연락조정을 위한 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다(제26조제1항).

#### 라. 이동 등 원활화 경로협정의 체결

중점정비지구 내의 일정한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차지권(借地權) 그 밖의 당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갖는 자는 전원의 합의에 따라 당해 토지구역에서 이동 등 원활화를 위한 경로 정비 또는 관리에 관한 협정(이동 등 원활화 경로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41조제1항 전단).

#### (10) 장애인 학대 방지·장애인의 양호인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sup>162)</sup>

##### 1) 개 관

이 법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장애인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며,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등을 감안하여 장애인에 대한 학대금지·장애인

162) 2011.6.24제정. 법률 제79호, 최종개정: 2012.8.22. 법률 제67호



학대의 예방 및 조기 발견 그 밖의 장애인 학대방지 등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장애인학대를 받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조치·양호인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등 양호인에 대한 양호인의 장애인학대 방지에 이바지하는 지원(이하, “양호인에 대한 지원”이라 한다)을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학대방지·양호인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 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2011년에 제정되었으며 총 8장 46개조로 구성되고 있다.

##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 학대의 조기발견 등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와 그 밖의 관계기관은 장애인 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상호 긴밀한 연계를 도모하면서 장애인 학대의 조기 발견에 노력하여야 한다(제6조제1항).

### 나. 양호인에 대한 지원

시정촌은 제3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것 외에 양호인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양호인에 대한 상담·지도 및 조언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정촌은 전항의 조치로 양호인의 심신상태에 비추어 그 양호 부담의 경감을 도모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장애인이 단기간 양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거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14조제1항 및 제2항).

### 다.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장애인 학대 방지 등을 위한 조치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자 또는 장애복지서비스 사업 등을 실시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연수를 실시하여 당해 장애인복

지시설에 입소하고, 그 밖의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당해 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의 불만처리 체제를 정비하고, 그 밖의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장애인 학대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제15조).

#### 라. 고용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 방지 등을 위한 조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 실시·당해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및 그 가족의 불만처리체제의 정비와 그 밖의 고용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 방지 등을 위해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21조).

#### 마. 시정촌 장애인학대방지센터와 도도부현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설치

시정촌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 또는 당해 시정촌이 설치한 시설에서의 해당 부서 또는 시설이 시정촌 장애인학대방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제32조제1항). 도도부현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 또는 당해 도도부현이 설치하는 시설에서의 해당 부서 또는 시설이 도도부현 장애인권리옹호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제36조제1항).

### 3. 소 결

일본의 장애인관련 법제는 신체장애인복지법, 지적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 그리고 최근의 발달장애인 지원법에 이르기 까지 장애유형별로 독립적 법률을 계속 제정하는 연혁을 가지고 있다. 신체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하여 장애인복지법을 우리나라 보다 비교적 먼저 제정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른 유형의 장애에 대하여도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많아짐에 따라 기존법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법형식이 아니라 별도의 새로운 법을 만

들어서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법적 지원을 하는 입법태도를 취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나름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고, 나라마다 입법인식과 시대상황이 다름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독립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없고, 최근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에 앞서 국내법을 정비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했다. 이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만을 금지하는 행위유형으로 하는 것에서 나아가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차별금지행위의 유형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는 ‘합리적 배려’조항은 장애인이나 가족 등이 요청이 있으면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복지 시설 등의 기관은 서비스제공의 의무를 지게 되며 민간사업자는 합리적 배려에 대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법제화 하고 있다.

## 제 5 장 장애인 복지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제 1 절 장애인법제 체계정비방안

#### 1. 현 황

다양한 규범들은 서로 무관하지 않으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존재한다.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도 그 탄생의 선후가 있을 뿐 각자의 입법 배경과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 관련법은 위로는 최고규범인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헌법규범에 맞는 내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또한 장애인복지 관련법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규범들은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되지 않는 내용과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들은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그때그때 제정되어 왔기 때문에 각 개별법률 자체만이 아니라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간의 체계성에 문제가 내재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 관련법의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고 상호간에 체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관련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sup>163)</sup>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 관련법제의 중심으로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금지에 관해서 규정하고, 또한 장애인복지조치에 대해서도 당연히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전분야에 걸친 전반적인 장애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종합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

163) 우주형, 앞의 글, 157쪽.

나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기능과 내용에 있어서 상호간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관련법제를 체계화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그 방안으로 ‘(가칭)장애인종합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기도 한다.<sup>164)</sup>

최근에 정부는 논란이 되어왔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장애인복지구조의 근본적 변혁이 예정되는 바, 장애인정책을 ‘복지’ 중심에서 ‘권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법으로 개정하여 ‘(가칭)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제정하고 이에 따라 장애인관련법제를 체계화하려는 방안이 주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칭)장애인권리보장법’의 주요내용으로 ‘장애의 새로운 정의’, ‘장애인중심전달체계 개편과 개인별지원체계’, ‘장애인 권리옹호의 제도화’, ‘표준소득보장금액의 명시’, ‘탈시설의 선언과 전환서비스체계’, ‘자립생활의 강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sup>165)</sup>

## 2. 개선방안

어떤 사항에 관한 관련법이 다수인 경우 이들 다수 법률 간의 수평적 체계적합성을 확보하는 입법기술로써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식이 이용된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가칭)장애인권리보장법’이라는 제명의 장애인종합법 제정 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면, 이 법이 장애인법제의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다른 장애인 관련법제의 내용과 체계가 ‘(가칭)장애인권리보장법’과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편제되어야만 저항이 적을 것이다.

오늘날 장애인복지가 권리보장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은 시대적 요청

16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위), 김정열, 김주영, 나운환, 남용현, 박종운, 배용호, 정일교, 조한진(공저), 장애인 법률, 그 비판과 전망,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10, 14쪽.

165) 박경석,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과 ‘시혜’에서 ‘권리’의 시대로 변화”,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토론회 자료집(2013. 6. 20), 5~22쪽.

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은 본래의 장애인복지 조치만이 아니라 장애인권리옹호나 차별금지에 관한 법조문까지도 포함하는 종합법의 형태로 가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중 장애인 권리옹호와 차별금지에 관한 것과 기본이념과 원칙, 기본원칙, 기본계획, 전달체계, 재정부담 등에 관한 규율은 기본법인 ‘(가칭)장애인권리보장법’ 내지 ‘(가칭)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여 그 법안에 담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서비스법’으로 체계화하는 방안<sup>166)</sup>도 고려될 수 있다.

(가칭)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을 폐지하고 이에 관한 규율을 모두 ‘(가칭)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의 형식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에 통합하여 규율하는 것은 현재 「장애인복지법」이 갖는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입법방안이라 할 수 없으며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서비스법으로서의 지위와 그에 맞는 법체계를 갖추어 (가칭)장애인권리보장법의 집행법으로 법적 지위를 갖는 입법방안이 바람직하다<sup>167)</sup>고 할 수 있겠다.

## 제 2 절 장애등급제의 개선방안

### 1. 현 황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가 있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이 있는 바, 장애인복지서비스도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근간은 장애인등록제와 장애등급이다.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으려면 장애인등록이 필요하고 장애인등록에는 장애등급이 같

166) 우주형, 157, 165쪽.

167) 국가인권위원회, 109쪽.

이 기재되어야 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주어진다. 따라서 개별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인복지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라 개인적인 욕구나 특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제공되며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도 이미 정해져 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등급제한으로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2013.12에 의학적 손상정도만으로 장애를 판정하는 현행 장애등급제의 폐지를 결정하고 새로운 장애 판정종합도구의 개발을 선언한 상태이다.

앞에서 장애등급별 서비스 제공내용을 게시한 바 있지만, 현재 80여 개이 주요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분석해 보면,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 여부가 결정되는 서비스는 아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2개의 서비스가 있고, 나머지 58개의 복지서비스는 등록장애인 중 장애 유형 혹은 소득과 같은 추가적 기준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표 12> 장애인복지서비스 유형 구분(168)

서비스 제공 기준		주요 제공 서비스(80종)	
		복지서비스	감면 할인
중경증 구분	중증 장애에 한해 적용	1. 장애인연금 2. 장애인활동지원 3.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4.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5.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6.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1. 고궁·박물관·공공체육시설 등 요금 감면 2. 도시가스 요금 할인 3. 전기요금 할인 4.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68)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과 제공(2014.9.3)



서비스 제공 기준		주요 제공 서비스(80종)	
		복지서비스	감면 할인
		7.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지원 8.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5.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중 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 6.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중·경증 구분 제공	1. 경증장애 수당 2. 장애아동 수당 3.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1.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 료 경감(산출보험료 경감) 2.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3. 항공요금 할인 4.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5. 장애인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
등록 장애	소득 등 별도기준 적용	1. 장애아보육료 2. 장애인의료비/검사비 지원 3. 장애인등록진단비 지급 4.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5.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운영 6.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7.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8.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9. 무료법률 구조제도 실시 10. 장애인 고용서비스 11. 장애인 일자리 지원 12.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운영 지원 1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4.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15.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 자금 대여 16. 승용자동차 LPG연료 개조지원 17. 주간 보호시설 운영 18.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치과유니트 지원 19. 장애인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20.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21.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	1. 고속도로통행료 50%할인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3. 유선통신 요금 감면 4. 이동통신 요금 감면 5.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6. 차량구입시 지역개발 공채구입 면제 7. 소득세 공제 8. 장애인의료비 공제 9. 장애인특수교육비 소득공제 10. 장애인보험료 공제 11. 상속세 상속 공제 12.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3.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 세율 적용 14.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15.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 구료 등의 감면 16.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17.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제 5 장 장애인 복지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비스 제공 기준		주요 제공 서비스(80종)	
		복지서비스	감면 할인
		22.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23.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24. 편의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영 25. 장애인문화 바우처 26. 장애인 여행 바우처 27. 장애인스포츠 관람 바우처	
	장애 (성별) 유형별 서비스 지원	1.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3. 언어발달지원 4. 방송수신기 무료보급(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 노인용수신기) 5. 장애인방송시청 지원 6.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7. 수화통역센터 운영 8.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9. 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 운영 10.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11.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12. 발달재활장애아 지원 13. 발달장애아 부모심리상담지원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2. 개선방안

의학적 장애정도에 따라 서비스가 임의로 결정되는 현행 장애등급 제도는 정부가 폐지를 결정했지만 개선되어야 한다.

장애 등급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던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 유형, 장애특성 등에 따라 맞춤형 판정기제를 개발하여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판정 체계는 의학적 장애 평가와 서비스 필요도 등을 조사하는 서비스 인정조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의학적 장애판정 이후 필요 서비스에 대한 인정조사를 거쳐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이 결정되도록 판정 체계를 설계하는 방안이 장애인의 개별적인 특성과 욕구를 잘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 특성 및 서비스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판정 체계의 도입으로 개별 서비스 단위의 지원이 아니라 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근거법들이 장애등급제의 개편에 따라 후속적으로 구체적인 개정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제 3 절 장애인 서비스 전달조직의 개선방안

#### 1. 현 황

이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나 정보접근 등이 어려운 장애인은 필요한 복지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장애인서비스 신청을 하면 시·군·구는 신청접수와 지급결정·통보를 하며, 지급결정이전에 필요한 경우는 국민연금공단이 인정조사를 한다. 그러나 장애인이 서비스적격자로 선정되더라도 결정된 서비스 제공을 민간단체 등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비스제공단체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워 실제로 서비스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전달에 관한 사항을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7까지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복지서비스 신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며, 소속 복지담

당공무원은 복지요구 조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서비스제공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서비스신청자인 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제33조의 3),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실시를 결정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을 작성하는데 이 경우에도 보호대상자 등의 의견을 고려하는 등 보호대상자 등의 욕구와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제33조의5).

「장애인복지법」은 재활상담 등을 통해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4조),

2014년 5월에 제정된 「발달장애인법」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신청,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과의 지원계획 내용 결정 과정에서의 장애인의 의사진술 및 의견 고려, 수급자로 결정된자에 대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의 지역 복지서비스기관과 등과의 연계 의무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 2. 개선방안

장애등급제 개편정책에 따라 앞으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도 필요하다. 이는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라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일률적으로 제공되던 체계를 장애인인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욕구 등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상정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별 사정체계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조정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전담조직은 장애인의 서비스 신청 접수, 개별신청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여부 및 제공내용 사정, 개별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및 결정, 개별서비스계획에 입각한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 제공 및 이용자와 서비스기관과의 연계, 연계된 서비스기관의 서비스 상황 등에 대한 사

전·사후 모니터링 등의 일련의 업무과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조정하는 전담조직 설치 및 역할에 대한 조항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제 4 절 사회복지서비스신청제도의 개선방안

### 1. 현 황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조항은 사회복지서비스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규정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은 2003년 7월 30일 개정 공포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sup>169)</sup>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2003년 일부개정법률 이전의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민간 사회복지주체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규제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은 지역 사회복지의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계획(제15조의3~제15조의6),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라는 제목으로 제2장의2(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7까지)를 신설했다.

2003년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제2장의2)의 신설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었다. 「국민연금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은 사회보험법상의 급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공공부조법에서는 이미 수급권이 권리로서 보장되어 있었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가 도입된 것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급권의 가능성을 보여준 입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170)</sup> 따라서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169) 법률 제6960호, 2003.7.30., 일부개정(시행 2004.7.31)

170) 윤찬영,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관련 판례의 의의와 입법적 과제”, 『비판사회정책』. 2012. 166쪽.

를 실현하기 위한 법의 수직적 체계성을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신청(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하고, 그 신청자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은 복지요구조사를 하고(제33조의 3),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 수급여부를 결정하고(제33조의 4), 수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보호대상자별 개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제33조의 5),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제33조의 6)하는데 제33조의 7에서 서비스 제공 방법을 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 실시에 관한 법규정대로 구현된다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수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사회복지서비스 실시에 관한 규정은 2012년 1월에 개정된 것이다. 2012년 1월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sup>171)</sup>은 종전 법률의 ‘보호’를 ‘서비스 제공’으로 ‘보호 계획’을 ‘서비스 제공 계획’으로 변경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 사회복지서비스 실시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여(제4조제9항), 복지요구 조사 시 보호대상자 의견진술 기회 제공(제33조의3제5항)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최근 「발달장애인법」 제정법에서 앞서서 기술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와 대동소이한 개인별서비스계획 신청 및 수립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으로 하여금 민간서비스제공기관과 서비스신청자를 연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2. 개선방안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부응하여 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온전하

---

171) 법률 제11239호, 2012.1.26., 일부개정(시행 2012.8.5)

게 구현하게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1) 공공사정체계 구축 의무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의 서비스 신청을 담당할 공공사정체계의 구축과 그에 따른 인력 및 예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 법률은 서비스 신청권을 구현하기 위한 공공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사무 전담기구의 설치(제15조) 및 복지전담공무원(제14조)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조항이 아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개인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공공사정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므로 시·군·구에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절차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고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2) 개인 특성별 서비스 제공 의무화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해도 신청에 따른 서비스 제공 책임을 명시하지 않고 절차적 권리만을 명시한 현행법아래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권은 사정책임자의 재량행위가 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와 급여의 제공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격과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는 요원한 일이다.

따라서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결정된 이상, 서비스신청 내용을 조사하여 제공계획을 수립할 때 ‘최대한 신청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 (3) 지자체간 협력 장치 마련

현행 규정은 장애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여 거주지원서비

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현재 거주 지자체가 서비스를 연계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다른 지자체로 이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자치단체 관할 지역 내에서는 신청된 서비스를 충족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다른 자치단체로의 서비스 제공의 의뢰나 이송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4) 이의제기 절차 도입

현행 규정은 서비스 신청 후 신청자의 욕구와 의사와 달리 서비스 제공계획이 이루어지거나, 신청거부가 행해질 경우 신청자가 보다 용이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 제 5 절 편의시설설치 기준 등의 개선방안

앞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① 공원, ② 공공 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③ 공동주택, ④ 통신시설, 그리고 ⑤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제8조제1항).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행령[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과 시행령[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에서 구체적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



설과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행규칙[별표 2] 편의시설의 안내표시 기준(제3조관련)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편의시설 설치대상을 건물의 용도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되는 시설로 규정하는 등 현행의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규정들은 그동안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1998년에 제정된 것으로 그 동안 국민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의식이나 장애인보장구의 보급으로 편의시설의 규모나 용도 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재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sup>172)</sup>

우선,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에 대한 현행법의 최소한의 설치기준을 최적의 설치기준으로 바꾸는 것<sup>173)</sup>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세부시설기준의 방향성도 최적의 설치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건물 용도별로 편의시설 설치 등급을 부여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율의 제고가 필요하다.<sup>174)</sup>

나아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시설에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며, 각 행정기관에서 관련 대상시설 중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172)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3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2013.11, 147쪽.

173) 앞글, 148쪽

174) 앞글, 147쪽



제 5 장 장애인 복지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및 자료>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3장애인통계(조사통계 2013-04)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2007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영역을 기준으로 한 외국 사례 연구 - 미국 장애인법과 호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201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교재 개발, 2013

권건보,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상황 검토”, 『법학논고』 제 39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06.30., 517-542쪽

김진우. 2008. “지적장애인 관점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복지정책』 제35호, 2008 169-195쪽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역), 김정열, 김주영, 나운환, 남용현, 박종운, 배용호, 정일교, 조한진(공저), 장애인 법률, 그 비판과 전망,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10, 14쪽.

박경석.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과 ‘시혜’에서 ‘권리’의 시대로 변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토론회 자료집, 2013, 6.20, 5-22쪽

박병식 등, 『장애인관련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2008, 보건복지가족부·한국정책평가원.

배용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 법률, 그 비판과 전망』, 2010,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73-296쪽

보건복지부, 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제58호, 2012년 11월

참 고 문 헌

우주형.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 『법제연구』 제41호.  
2011, 125-175쪽

윤찬형,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관련 판례의 의의와 입법적 과제,” 『  
비판사회정책』 제34호, 2012.2, 163-194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3 장애인편의시  
설 실태전수조사, 2013.11

보건복지부 등,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http://www.m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  
MENU\\_ID=031601&page=1&CONT\\_SEQ=288936](http://www.m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1&page=1&CONT_SEQ=288936)(2014.6.25.방문)

보건복지부, 통계포탈 주요지표 100선, 장애수당 수급자 수(2012),  
[http://stat.mw.go.kr/front/statData/majorIdctView.jsp?menuId=17&gui  
dSeq=158&ctgr=F00005](http://stat.mw.go.kr/front/statData/majorIdctView.jsp?menuId=17&guidSeq=158&ctgr=F00005)(2014.6.30방문)

보건복지부, 통계포탈 주요지표 100선,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2012),  
[http://stat.mw.go.kr/front/statData/majorIdctView.jsp?menuId=17&gui  
dSeq=159&ctgr=F00005](http://stat.mw.go.kr/front/statData/majorIdctView.jsp?menuId=17&guidSeq=159&ctgr=F00005)(2014.6.30. 방문)

보건복지부, 통계포탈 주요지표 100선,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수(2012),  
[http://stat.mw.go.kr/front/statData/majorIdctView.jsp?menuId=17&gui  
dSeq=160&ctgr=F00005](http://stat.mw.go.kr/front/statData/majorIdctView.jsp?menuId=17&guidSeq=160&ctgr=F00005)(2014.6.30방문)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2013년말\_장애인\_등록현황(최종)-22종.xlsx,  
[http://www.mw.go.kr/front\\_new/policy/policy\\_bd\\_vw.jsp](http://www.mw.go.kr/front_new/policy/policy_bd_vw.jsp)

<외국문헌 및 자료>

Bagenstos, Samuel R, The Future of Disability Law, 114 Yale Law  
Journal 1 (October, 2004), pp.1-84.

- \_\_\_\_\_, Law and the Contradictions of the Disability Rights Movemen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9.
- Diller, Matthew, Entitlement and Exclusion: The Role of Disability in the Social Welfare System, 44 UCLA Law Review 361 (December, 1996), pp.361-464.
- Nahigyan, Pierce, “Why the U.S. Refuses to Ratify the U.N. Disabilities Treaty,” NATIONOFCHANGE, Mar. 18, 2014, <http://www.nationofchange.org/why-us-refuses-ratify-un-disabilities-treaty-1395147907>.
- Milani, Ruth Colker and Adam A., Federal Disability Law in a Nutshell, West Thomson, 2010.
- Pecquet, Ramsey Cox and Julian, “Senate rejects United Nations treaty for disabled rights in a 61-38 vote,” TheHill, Dec. 4, 2012, <http://thehill.com/policy/international/270831-senate-rejects-un-treaty-for-disabled-rights-in-vote>.
- Proszek, Jeffry S. Wolfe and Lisa, Social Security Disability and the Legal Professional, New York: Thomson, 2003.
- Rothstein, Laura, Disabilities and the Law § 1:9 (4th ed.) 2014. [www.westlaw.com](http://www.westlaw.com);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089838>.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Benefi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ttp://www.ssa.gov/disability/> (2014. 6. 15. 최종방문).
- Weber, Mark C, Disability and the Law of Welfare: A Post-Integrationist Examination, 2000 U. ILL. L. Rev. 889 (2000), pp.889~956.
- \_\_\_\_\_, Understanding Disability Law, Newark: LexisNexis, 2007

참 고 문 헌

\_\_\_\_\_, Disability Rights, Welfare Law, 32 Cardozo Law Review 2483 (July, 2011), pp.2483~2531

U.S. Department of Justice, A Guide to Disability Rights Laws, July 2009, <http://www.ada.gov/cguide.htm> (2014. 6. 14. 최종방문).

CRPD, Convention and Optional Protocol Signatures and Ratifications, <http://www.un.org/disabilities/countries.asp?navid=17&pid=166> (2014. 6. 5. 최종방문)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 o=IV-15&chapter=4&lang=en](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 o=IV-15&chapter=4&lang=en) (2014. 6. 14. 최종방문).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in Air Travel, ACAA Final Rule, 14 CFR Part 382. <https://www.sbbartgroup.com/blog/2013/12/02/air-carrier-access-act-final-rule-and-web-accessibility-requirements/>

[http://www.ada.gov/ada\\_intro.htm](http://www.ada.gov/ada_intro.htm)

<http://www.ablenews.co.kr/ablewindow/liveservice/View.aspx?ConnectId=kaid&NewsCode=16755>

<http://www.fcc.gov/encyclopedia/twenty-first-century-communications-and-vid eo-accessibility-act-0> (2014. 6. 14. 최종방문).

<http://www.fcc.gov/guides/telecommunications-access-people-disabilities>

[http://www.eac.gov/voter\\_resources/resources\\_for\\_voters\\_with\\_disabilities.aspx](http://www.eac.gov/voter_resources/resources_for_voters_with_disabilities.aspx); <http://www.nyc.gov/html/mopd/html/laws/vaeha.shtml>.

[http://www.justice.gov/crt/about/vot/42usc/subch\\_ih.php#anchor\\_1973gg](http://www.justice.gov/crt/about/vot/42usc/subch_ih.php#anchor_1973gg).

[http://www.justice.gov/crt/about/vot/nvra/activ\\_nvra.php](http://www.justice.gov/crt/about/vot/nvra/activ_nvra.php).

[http://portal.hud.gov/hudportal/HUD?src=/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disabilities/sect504](http://portal.hud.gov/hudportal/HUD?src=/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disabilities/sect504).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Benefi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ttp://www.ssa.gov/disability/> (2014. 6. 15. 최종방문).

<http://www.gsa.gov/portal/category/21630>. Architectural Barriers Act Accessibility Standard (ABAAS).

<http://www.southwestada.org/html/publications/ebulletins/legal/2009/may2009.html>

[http://www.eeoc.gov/eeoc/history/35th/thelaw/rehab\\_amendments\\_1978.html](http://www.eeoc.gov/eeoc/history/35th/thelaw/rehab_amendments_1978.html).

[http://www.ssa.gov/OP\\_Home/ssact/title02/0200.htm](http://www.ssa.gov/OP_Home/ssact/title02/0200.htm).

[http://www.ssa.gov/OP\\_Home/ssact/title16b/1600.htm](http://www.ssa.gov/OP_Home/ssact/title16b/1600.htm).

<http://www.ssa.gov/pubs/EN-05-11000.pdf>.

<http://www.thebody.com/content/art13091.html>.

<http://law.e-gov.go.jp/cgi-bin/idxsearch.cgi>(최종방문 2014.10.28)